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요약 -

2005. 10

목 차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제 1 부 총괄분석

I. 2006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5
II. 2006년도 경제전망	9
III. 세입예산안 분석	11
IV. 세출예산안의 자원배분 분석	13
V. 2006년도 재정정책 효과 분석	15
VI. 예산총칙 등 분석	17
VII.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22

제2부 중점분석

국가균형발전 / 27

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27
II.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안 분석	29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32

I. 7대 사회보험 재정분석	32
II.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 재정분석	35

국가 경쟁력 강화 / 38

- I. SOC 민자사업 재정분석 38
- II. 신항만건설사업 예산안 분석 39

제3부 부문별분석

통일·외교 / 45

- I. 통일·외교 분야 재정분석 45

국 방 / 48

-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48

교 육 / 51

-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51
- II. 대학 구조개혁 예산안 분석 54

문화·관광 / 56

- I. 문화·관광 분야 재정분석 56

사회복지 / 58

- 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58
- 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61
- III. 보육정책과 보육재정 분석 64

환 경 / 66

- I. 환경 분야 재정분석 66

산업·중소기업 / 70

- I. 산업 분야 재정분석 70

농어촌 / 74

I. 농어촌 분야 재정분석 74
II. 직접지불제사업 예산안 분석 76

사회간접자본 / 78

I. 사회간접자본 분야 재정분석 78

과학기술·정보통신 / 83

I. R&D 분야 재정분석 83
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86

일반행정 / 89

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8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제1부 총괄분석

I.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99

제2부 중점분석

I. 기금 정비의 추진현황과 과제 103
II. 기금결산 심사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 연계 분석 105
III.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09
IV. 복권기금 분석 114

제3부 부문별분석

재정·금융 / 119

- I. 외국환평형기금 119
- II. 공공자금관리기금 120

통일·외교 / 122

- I. 남북협력기금 122
- II. 국제교류기금 123
- III. 대외경제협력기금 124

국 방 / 127

- I. 군인복지기금 127
- II. 보훈기금 128
- III. 군인연금기금 130

교 육 / 131

- I. 사학진흥기금 131
- II.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

문화·관광 / 134

- I. 문화예술진흥기금 134
- II. 국민체육진흥기금 135
- III. 관광진흥개발기금 135
- IV. 방송발전기금 136

과학기술·정보통신 / 138

- I. 과학기술진흥기금 138
- II. 정보통신진흥기금 139

농어촌 / 141

I. 축산발전기금 141
II. 농지관리기금 142
III.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43

산업·중소기업 / 145

I. 전력산업기반기금 145
II.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46

사회복지 / 148

I. 국민연금기금 148
II. 국민건강증진기금 150
III. 공무원연금기금 151

환 경 / 153

I. 한강수계관리기금 153

노 동 / 155

I. 고용보험기금 155
II.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6

사회간접자본 / 158

I. 국민주택기금 158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제 1 부

총괄분석

I. 2006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1. 2006년도 예산안 개요

□ 예산규모

2006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조원)

	2005		2006 예산안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본예산 대비	추경안 대비
총지출	207.8	208.7	221.4	6.5	6.1
예산	146.6	147.5	156.5	6.8	6.1
일반회계	106.6	107.5	115.5	8.3	7.4
(총계)	(134.4)	(135.5)	(145.7)	(8.4)	(7.5)
특별회계	40	40	41	2.5	2.5
(총계)	(60.6)	(60.6)	(57.4)	(-5.3)	(-5.3)
기금	61.2	61.2	64.9	6.0	6.0
(총계)	(319.2)	(319.2)	(358.6)	(12.3)	(12.3)

자료: 기획예산처

□ 재원배분

2006년도 예산안 재원배분

(단위: 조원)

분야		2005년 본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예산	15.5	17.2	1.7	10.9
	기금	33.8	37.5	3.7	11.0
	총계	49.3	54.7	5.4	10.8
2. 교육	예산	27.5	29.0	1.5	5.2
	기금	0.1	0.1	-	-
	총계	27.6	29.1	1.5	5.1

(단위: 조원)

분야		2005년 본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3.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	18.3	17.8	-0.5	-2.7
	기금	-	-	-	-
	총계	18.3	17.8	-0.5	-2.7
4. 농림·해양수산 (농어촌 투융자)	예산	9.7	10.0	0.3	3.2
	기금	4.4	4.4	-	-
	총계	14.1 (10.8)	14.4 (11.4)	0.3 (0.6)	2.0 (5.6)
5. 산업·중소기업	예산	6.5	7.1	0.6	9.9
	기금	5.4	5.3	-0.1	-1.9
	총계	11.9	12.4	0.5	4.2
6. 환경보호	예산	3.0	3.2	0.2	6.7
	기금	0.6	0.6	-	-
	총계	3.6	3.8	0.2	6.4
7. 문화·관광	예산	1.5	1.7	0.2	10.2
	기금	1.1	1.2	0.1	9.1
	총계	2.6	2.9	0.3	9.8
8. 국방(일반회계)	예산	20.8	22.9	2.1	9.8
	기금	-	-	-	-
	총계	20.8	22.9	2.1	9.8
9. 통일·외교	예산	1.0	1.0	-	-1.1
	기금	1.0	1.7	0.7	70
	총계	2.0	2.7	0.7	36
10.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9.4	10.2	0.8	9.1
	기금	-	-	-	-
	총계	9.4	10.2	0.8	9.1
11. R&D	예산	6.7	7.3	0.6	8.2
	기금	1.1	1.7	0.6	54.5
	총계	7.8	9.0	1.2	15.0
12. 국가균형발전	예산	5.5	5.9	0.4	8.4
	기금	-	-	-	-
	총계	5.5	5.9	0.4	8.4

2. 총 평

-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9조원이며, 2006년말 국채발행 잔액은 2005년도 228.3조원보다 33.2조원 증가한 261.5조원으로 예상된다.
 - 중앙정부의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하는 국가채무액을 살펴보면, 2006년말 279.9조원으로서 GDP대비 3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재정본연의 기능과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재정규모가 적절히 확충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중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이 중요하나 최근 운영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음.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5월의「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005년도 5.7조원, 2006년도 5조원이었으나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각각 9.8조원 및 9조원으로 수정됨.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당해연도의 재정적자를 용인받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이 달성된다는 장밋빛 전망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낙관적 경제전망에 기초하여 세입여건도 낙관적으로 볼 경우 중기적 지출한도를 부여받은 정부는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당초의 지출액을 고수하려 할 것이므로 재정수지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할 필요가 있음.

- 2006년도 예산안의 재원배분 방향은 참여정부의 국가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선진국의 지출구조와의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도 기본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보임.
- 다만,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그 성격상 한번 증가하면 사정이 변화하여도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적 지출이 많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성격을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로 나누어 중장기 전망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경제분야에서 BTL 방식 등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자금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을 위한 자금투입이 되는 것이므로 중기계획이나 예산상 재원배분시 명시적으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절차 및 기속성 부여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 현재는 10월에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정 및 국회제출시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는 시점인 봄철(5월경)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회가 삭감·증액 하는 등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두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봄철에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I. 2006년도 경제전망

1. 경제현황

-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임.
 -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는 추세임.
 - 고유가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내수의 본격 회복 지연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중 2.3%에 그쳐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2005년 중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미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2005년 들어서 달러화는 약세기조에서 벗어나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중 미달러화는 연간으로 보면 2005년과 비슷한 수준 (여타 선진국 통화 대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조절정책 및 고유가로 인해 2005년 중 세계경제는 2004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중 세계경제는 고유가의 지속 및 국제금리의 상승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2005년 수준인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2006년 국내 경제전망

- 국내 경제는 2005년(3.7%) 대비 1%포인트 높은 4.7%의 실질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민간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과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2005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내수경기 회복,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006년도 주요경제지표 전망

	2002	2003	2004	2005(E)			2006(E)
	연간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	7.0	3.1	4.6	3.0	4.3	3.7	4.7
민간소비 (%)	7.9	-1.2	-0.5	2.1	3.5	2.8	4.2
설비투자 (%)	8.4	-1.2	3.1	3.0	3.5	3.3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4.1	2.1	1.2
소비자물가 (%)	2.7	3.6	3.6	3.2	2.7	2.9	3.2
실업률 (%)	3.3	3.6	3.7	3.9	3.6	3.8	3.7
경상수지 (억 \$)	54	120	276	87.1	71.2	158.3	117.7
상품수출 (통관기준, %)	8.0	19.3	31.0	10.8	14.3	12.6	10.8
상품수입 (통관기준, %)	7.8	17.6	25.5	14.8	17.8	16.3	11.7
국고채수익률 (% , 평균)	5.8	4.6	4.1	3.9	4.5	4.2	4.8
원/달러 환율 (평균)	1,251	1,192	1,145	1,015	1,031	1,023	1,010

- 주: 1) 설비투자에 무형고정자산 포함.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3) 회색 바탕색은 전망치임.

III. 세입예산안 분석

- 중앙정부의 총수입을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비금융기업 경상수입, 용자회수로 분류하여 전망함.
 - 총수입 구성항목들에 대한 전망은 현행 세법 및 여타 관련법이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함.

- 중앙정부 총수입의 구성항목별 전망을 통하여 NABO의 총수입 전망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표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6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 2005년과 2006년 중앙정부 총수입 전망과 비교·분석하였음.
 - 행정부는 2005년 4.8%, 2006년 7.5%의 경상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NABO는 2005년 4%, 2006년 7.1%의 경상성장률을 전제함.

-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2005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NABO는 127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반면 행정부는 126조 6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조 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 중앙정부 총수입을 NABO는 224조 2천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반면 행정부는 222조 4천억원으로 예상함.
 - 2005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ABO는 국세수입과 중앙정부 총수입을 행정부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함.
 - 국세수입에 대한 행정부와 NABO의 전망치는 모두 2005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조원을 상회하는 세수부족을 예상하고 있음.

- 2006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NABO는 134조 9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반면 행정부는 13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6년에 예정되어 있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기업 주식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NABO는 중앙정부 총수입을 233조 9천억원으로 예상하는 반면, 행정부는 235조 6천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2006년도 거시경제여건에 대한 NABO의 전제조건이 행정부의 전제조건보다 보수적이어서 NABO의 전망결과는 국세수입과 중앙정부 총수입을 행정부보다 각각 1조원과 1조 7천억원 정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6년 NABO 국세수입 전망은 200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대비 6.14%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여타 중앙정부 총수입 구성항목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은 8.22%와 9.8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 확대 시행되고 기금운용수익의 호조가 예상되어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여타 중앙정부 총수입 구성항목들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IV. 세출예산안의 자원배분 분석

1. 2006년도 예산안의 자원배분

-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중점지원과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 내실화’, 그리고 자원배분 12대원칙에 따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 안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과 지원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된 분야,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등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분야,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 국가안전 확보와 관련된 분야 등임.
 -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는 SOC분야, 농·어촌 분야,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임.

2. 주요 분야의 자원배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단순비교와 소득수준, 산업구조, 인구구조, 도시화정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정부지출국제비교지수(IEC지수) 비교를 통해 분야별 자원배분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방위, 경제사업, 교육은 지출수준이 높고, 사회보장 및 복지는 지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수준이 높아질 분야는 사회보장 및 복지이고, 지출수준이 감소할 분야는 방위, 경제사업 등으로 나타남.

- 연도별 IEC지수를 사용하여 정부의 재원배분기조 변화를 검토한 결과,
 - 국방 분야는 2006년도 예산안에서 정책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국방 분야 지출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음.
 - 교육 분야는 2006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2005년과 거의 비슷한 지출비중 및 정책우선순위가 유지되고 있음.
 -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는 지출비중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2006년도 예산안 주요 분야 재원배분 기조 분석

		방위비	경제사업비	교육비	사회보장 및 복지
비중	2001~2003평균	12.0	22.5	16.7	15.3
	2004~2006평균	11.5	20.6	15.1	17.7
	2004	11.6	23.1	15.8	16.9
	2005	11.4	20.0	14.9	17.7
	2006	11.5	18.8	14.6	18.5
IEC지수	2001~2003평균	149.5	204.6	143.0	60.5
	2004~2006평균	159.6	177.8	135.8	62.5
	2004	144.9	189.6	133.6	63.0
	2005	168.3	174.9	137.0	61.3
	2006	168.3	168.1	137.1	62.7

주 1: IEC 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에 의한 것임.

2: 정부지출 중 공적자금 상환소요를 제외한 분석결과임.

V. 2006년도 재정정책 효과 분석

-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경기대응 기능은 상충하는 재정정책 목표임.

1. 재정정책 과제

- 대외적으로 개도국의 추격과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대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약화 등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여건 하에서 우리 재정정책의 목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임.
 -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정책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재정수입 현황을 감안할 때, 엄격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수입의 측면에서나 지출의 측면에서나 예외보다는 일정한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을 갖고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재정정책기조 분석

-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른 재정정책기조는 200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장적임.
 - 전반적 재정정책 기조는 200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확장적이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경에 의해 2005년 본예산에 비하여 수지가 악화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는 상대적으로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의 반영임.

3. 재정건전성 분석

- 2006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정부의 전망보다 낮아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2006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정부는 불변가격기준으로 5.0%, 경상가격기준으로 7.5%를 전망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불변가격기준으로 4.7%, 경상가격기준으로 7.1%를 전망함.
 - 2006년도에 재정수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과의 차이는 작게는 9,000억원, 크게는 2조 8,500억원 발생함에 따라 2006년도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정부의 전망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 차이가 남

-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재정수지 변화에 의해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나 본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악화됨
 - 2006년도의 국가채무는 경상가격기준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배 정도의 속도로 급속히 증가함
 - 2006년도 경상가격기준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이 작게는 2조 2,500억원, 크게는 7조원만큼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1.25%포인트에서 1.75%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재정수지 축소 보전방안 중 적극적인 지출 억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자국채 발행, 수입 확대, 지출 억제 방안에 대한 비교와 선택이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출 억제로 알려져 있음.

VI. 예산총칙 등 분석

1. 예산총칙

- 예산총칙 제9조에서는 국가의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 차입금 및 국채발행 한도액은 77조 5,600억원에 달함.
 -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채무가 2004년 결산기준 203.1조원으로 GDP 대비 26.1%에 이르고 있음.
 - 국가채무 중 국채는 전체 국가채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차입수단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할 수록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국채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됨.

- 제7조의 계속비 연부액 선시공 제도는 첫째,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한 제약이며 둘째, 당해연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것만큼 국가에 채무부담을 지우는 행위임.
 - 따라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수정의결을 얻어야 할 것임.

- 예산총칙 제15조에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이익잉여금의 예상분’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정 이익이 아닌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예산총칙을 변경해야 함.
 - 왜냐하면 전년도 결산상 이익잉여금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추정 이익잉여금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세입 결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더욱이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총칙의 규정은 동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예산총칙 제16조에 의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출금은 약 2,000억원 정도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에 조직, 인사 등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재정운영상의 자율성이 동 제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2006년 예산안을 보면 책임운영 기관 총 18개 중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17%인 3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책임운영기관들은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책임운영기관 지정시 대상기관에 대한 재정상의 자율적 운영가능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임.

2.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단 발생하면 차년도의 재정부담이 되므로 채무부담행위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그동안 국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200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 외교통상부·국방부·해양경찰청 소관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건설교통부 소관이 각각 계상되고 있음.
 - 200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5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1%(2,332억원)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3.3% 증가(1,000억원)하였음.

- 그 중 국방부가 전체국고채무부담행위 2조 122억원 중 86.7%인 1조 7,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국유화 사업에 363억원 (1.8%), 해양경찰청의 함정건조 사업에 2,320억원(11.5%)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국도건설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전체(4,000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문제점으로는

- 국방부의 경우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증가하면 차기 연도의 각 군 소요물량의 사전 안정적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 정부의 전체 국가예산 운영 입장에서 보면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비율증가는 차기연도에 지불해야 할 상환금이 증가한다는 의미함. 이에 따른 예산 운용상의 부담감과 원가상승에 대한 추가부담이 우려됨.
-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사업의 경우는
 - 당해연도 국고채무행위 한도액만큼 외환은행 현지 지점에서 차입금을 이용하여 공관이나 관저신축사업을 하고 있음.
 - 당초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사업은 예산서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의결되어 있으나 실제운동은 차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성격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경찰청의 경우는 대형함정 건조예산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현 재정형편상 해양경찰청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편성은 대형함정 확보가 마무리되는 2008년까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동사업의 일반회계 세출 편성 방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사업의 경우는
 -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증액시켜 외상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안임.
 - 건설교통부는 추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2005년 수준과 동일하게 3,000억원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비율이 과다하게 커지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명시이월비

□ 그동안 명시이월비는 항별 총액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인 사업단위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었음.

□ 2006년도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에서 총 1,3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5년 대비 1.1% (14억 2,000만원) 증가하였음.
 - 그 중 국방비의 전력투자에 1,096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명시이월비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용 헬기구입에 249억원이 편성되어 18.5%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비의 문제점으로는

- 국방부의 경우 그동안 명시이월비 편성현황을 보면
 - 항별 한도액만 있을 뿐 단위사업별 내역이 없어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확정됨에 따라 단위사업이 미

정인 상태에서 항별 총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심의·확정되었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2005년도 예산안부터는 단위사업별로 명시이월비가 편성되어 편성대상을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개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2006년도 명시이월비 편성 내역을 보면 해외여건변동으로 인한 외자 장비 도입지연에 대비한 명시이월비의 편성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기동타격부문의 11기보사 개편사업(2006년도 예산: 268억원)등이 선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4. 계속비

□ 200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계속사업 연부액(총사업비; 12조 9,723억원)이 2005년 예산기준 계속사업 연부액(총사업비; 10조 2,552억원)보다 총 2조 7,171억원이 증가하였음.

- 2006년도 총 사업비의 회계별 내역을 보면 모두 교통시설특별회계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의 도로건설·철도개량 및 해양수산부 소관의 항만건설이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계속비사업 7개 중에서 전년대비 총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 건설교통부의 지역국도 10차사업, 지역간선국도 사업, 장항선개량사업, 부산신항남측컨테이너 부두 2-2단계 사업 등 4개이고
 -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기간국도 8차사업, 기간국도 9차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새로 신규사업에 편입된 사업은 지역 간선국도 2차 사업임.

□ 계속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는 수년간의 총 사업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점 등으로 계속비제도를 적극 도입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의 경비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가능, 재원의 특성상 사업기간 동안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효과적인 측면이 많음.
 -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비제도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행 예산회계법 22조에는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 실제로 대형건설사업 위주로만 적용되고 있을 뿐 연구개발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장기대형연구사업의 경우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계속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VII.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대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전년 대비 1개 늘어난 총 21개로 구성됨.
- 총계기준으로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1조 3,325억원(8.4%) 증가한 것과는 달리 특별회계는 상기 2개의 특별회계 신설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의 폐지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대폭 감소에 의해 전년대

비 7조 1,640억원(11.1%)이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 및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1991~2006년의 16년 동안 특별회계는 14조 7,140억원에서 57조 4,000억원으로 3.9배,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은 31조 2,830억원에서 145조 7,030억원, 그리고 41조 5,080억원에서 206조 5,000억원으로 각각 4.6배와 5.0배씩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 대비 특별회계 비중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검토한 결과,
 - 통합재정 대비 일반회계의 상대비중이 증가할 때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지만 통합재정 대비 특별회계의 상대비중이 증가할 때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었고,
 - 이는 결국 통합재정적자의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기금 적자에 의해 결정되어온 재정통계를 입증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과다(35.7%)하고 특히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98.4%)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93.4%)의 주 수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입구조가 중복된 상기 두 회계·계정 간 구조 조정이 필요함.

- 세출측면에서, 동일(유사)목적사업을 여러 특별회계 및 동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 분산하여 수행하는 것은, 비록 소관부처가 각자의 재정운영논리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여러 회계 또는 계정으로 분산되어있는 동일목적사업을 회계 또는 계정별로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시작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의 여건과 함께 예산구조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예산목적을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편성의 원칙을 한 방안으로 적용시킬 수 있음.

제 2 부

중점분석

국가균형발전

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 정부는 균특회계를 설치하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추진되던 균형발전사업들을 통합하였고, 기존의 지방재정보전수단이었던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기존에 일반회계 등에서 국가 직접 편성사업으로 추진되던 보조 사업 등을 대부분 지자체 자율편성 형식으로 전환하였음.
 - 그런데 균특회계의 조달재원, 사업의 통합정리, 개편된 예산편성 절차, 균특회계 운영 행태 등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자체 자율 제고라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첫째는 균특회계 포괄범위 및 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 균특회계의 재원인 일반회계·농특·농특세 등의 전입금은 기존에 동 회계들에서 추진되던 균형발전 사업이 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형식적으로 통합된 재원이고,
 - 주세 또한 지방에 양여금 형태로 지원되던 재원을 그대로 균특회계에 흡수한 것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발굴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과,
 - 지방양여금을 설치하면서 도입된 목적세인 주세를 균특 재원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목적세의 취지에 합당한가라는 점임.
 - 따라서 균특회계 포괄범위를 확대하면서 재원구성 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둘째는 재원배분과 관련된 문제임.

- 우선 시·도별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배분 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 기준에 의할 때 지자체별 신청한도 중 50%에 대해서만 낙후도, 재정력 지수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 균형요소를 강조하는 지역개발개정 자율편성 부문의 목적에 충실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 기초 자치단체별 배분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배분기준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시·도별 배분 기준에 있어 균형요소를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 재원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는 균특회계 사업편제와 관련된 문제임.

- 균특회계 사업은 크게 지역개발계정사업과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나뉘고, 지역개발계정은 다시 자율편성대상사업과 재해예방 등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나뉘는데, 지역개발계정의 자체자율편성대상 사업 중 자율편성사업으로 존치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지역개발계정 사업은 타 분야 사업에 비해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지자체 재정능력상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 지자체가 사업을 유지하는데 유인을 제공하는 사업이라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사업 중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지자체 선호도도 낮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집행의 필요성 낮은 사업이라면 이를 폐지하고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획예산처는 균형발전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지적 되어 왔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적용하였음. 그러나 단위사업에 대한 정리 없이 상위 개념으로 묶기만 하는 기술적·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으로 묶는 과정에서도 부처와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했음.

□ 넷째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관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임.

- 집행률 부진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임.

- 먼저, 지역혁신사업 계정 예산편성 절차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협의회 협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균특회계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II.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안 분석

□ 낙후지역개발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총 1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 상에 1조

46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유사·중복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에서 수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거시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두 사업의 통합 또는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중복 지정된 20개 면지역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농림부의 지역특화시범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보조사업 간에는 지역의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음.
 -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에 있어서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중복성이 있음. 또한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소도읍육성사업과 6개 사업에 유사·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고,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4개 사업 및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2개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여러 부처간의 경쟁적인 “소규모 분산투자”는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투자를 어렵게 하여 집행부진을 초래하고, 사업의 중복에 따른 재원 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단기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사업별로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상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적합한 전체 지표가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고려 지표가 사업별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낙후지역 선정의 체계화는 각 사업별로 근거법에서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각 개정하거나, 아예 통합하여 낙후지역 관련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사업비 배분 방식을 검토한 결과,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은 사업계획량이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음.
 -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경우 400여개 면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보다는 인구, 면적, 도로포장을 등 오지면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소요액에 맞추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지종합개발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반 시설 부분을 확충한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2006년에 편성되어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예산 1,083억원은 기반시설사업 위주에서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

I. 7대 사회보험 재정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의 7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 총 운용액은 130조원 규모이며, 2006년도 말 순 조성액은 208조원 규모임.
- 2006년도 7대 사회보험 재정수지를 보면, 보험료 등의 수입 54조 8,804억원, 사회보험료 국가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액 6조 1,514억원¹⁾임. 급여비 등의 지출은 6대 사회보험성 기금 25조 4,566억원, 건강보험 22조 6,683억원으로 총 48조 1,249억원임.
- 사회보험 재정운용방식은 ‘6대 사회보험성 기금’과 별도의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7대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심의회는 건강보험이 제외되므로, 총 지출액 기준시 53%에 국한됨.
 - 건강보험은 국고지원액 부분에 국한하여 심의되므로 국회의 실질적인 재정통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공공부문 재정운용원리에 합당하게 「국민건강보험기금」(가칭)으로 운용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1)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지방비 및 전년년도 정산잔액 제외시 5조 4,959억원임.

-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수지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건강보험 3조 9,056억원, 공무원연금 8,452억원, 군인연금 9,261억원의 총 5조 6,769억원이 지출될 예정임. 이는 전년대비 10.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부 총 지출 증가율보다 4%p 높은 수준임.

- 건강보험 지원의 문제는 연평균 1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급여비 지출에 연동되어 지역급여비 추정액의 50%가 지원된다는 점임.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출한도 내에서 의무지출인 건강보험 지원액의 자동 증가로 인하여 재량지출 복지사업의 축소 내지 국고사업 기금이관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2006년 중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의무지출을 규정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대비하여,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2006년 총 1조 7,713억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수지적자에 대한 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급증하는 보전금 소요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2005년간 보전금 지출은 1조 219억원이었으나, 2006~2010년간 보전금 지출은 9조 3,041억원으로 추정되어, 지난 5년간에 비하여 향후 5년간 지출액이 9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06년도 적립금 규모는 전년의 9조 1,113억원보다 1,925억원 증가한 9조 3,038억원으로 예상됨. 보험료 수입액 대비 적립금 비율은 2.7배로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됨.
 - 노동부는 정확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를 통하여 적정 적립금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정 수입과 지출을 산출한 후 기금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 2006년도 산재보험기금의 법정책임준비금은 4조 7,078억원 규모인데 비하여 실제 적립금은 2조 5,70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2조 1,3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노동부는 적립금 부족액을 단계적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사업은 영세사업장 등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2004년의 경우 영세사업장인 5~9인 미만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사업 활용도가 각각 11.6%와 3.0%로 매우 저조한 활용도를 나타냄.

- 7대 사회보험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2,528억원으로, 2005년도 지원액에 비하여 오히려 2.3% 감소함. 이는 5조 6,769억원 규모의 사회보험 급여비 지원액이 전년대비 10.1% 증가한 것과 대조됨.
 -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국민연금 31.1%, 건강보험 12.7%, 산재보험 2.4%, 고용보험 0.2% 등으로, 평균 14.4% 수준임. 사회보험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명확한 기준보다는 제도별 재정형편에 따라 임의적으로 차등 지원됨.

- 국가가 최종 운영책임자인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전반에 걸친 수지균형과 건전성을 감안하면서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급여비 보전보다 관리운영비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한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II.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 재정분석

- 2006년도 영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전년대비 7.1% 감소
 - 각 부처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2006년도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7,989억원으로 전년도 8,698억원보다 8.2% 감소했음.
 - 여성가족부의 여성기술인창업자금 지원 예산안의 경우 전년대비 99% 감소했는데, 이것은 2005년까지 융자사업이었던 것이 2006년도부터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여성기술인창업자금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님.
 - 따라서 여성기술인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2006년도 자영업자 지원 관련 전체 예산안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것임.

- 자영업자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직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실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 운영노하우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교적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음식, 소매업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준비기간이 짧을수록 수익이 낮고 부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자영업 창업 지원사업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함.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제점

- 전체 사업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에 걸맞게 조직을 체계화하고 상담사들의 신분도 컨설턴트의 지위에 상응하도록 안정화하고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2006년도 소상공인지원 용자 예산안 15.7% 감소

- 금융시장의 자금 사정도 여유가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민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소상공인지원 용자예산안을 축소하였음.
 -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5년 만기 장기대출을 민간금융시장에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민간자금 활용으로 장기대출 자금인 소상공인지원 용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 소상공인지원 용자금 4,300억원은 자영업자 규모가 486만명, 소상공인 규모가 267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의 자영업자만을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지원 용자사업은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을 좀더 분명하게 좁혀야 함.
 - 현재 소상공인지원 용자금은 정책금융이면서도 장기대출이란 점을 제외하면 민간자금과의 차이가 별로 없음.
 - 용자금 대부분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업자들에 주어지고 있고 창업자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 중앙센터는 퇴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자영업자, 그리고 혁신형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부실형·현상유지형·유망혁신형 등과 같이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 소상공인지원 용자사업이 정책금융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신규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형 창업에 중점

을 두어야 함.

- 지원대상 범위를 잘못 선정한 노동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창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 요인은 대개 본인의 실직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사망 혹은 병, 이혼 등 가족문제 때문임.
 - 더욱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했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취업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이 여성 구직자들의 현실임.
 - 따라서 노동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이 임금근로자 경력이 없는 실업여성가장을 지원대상에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임.

-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여성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의 중복문제
 - 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1억원 한도에서 연 4.5% 금리인 반면, 여성발전기금의 여성가장창업자금 융자사업은 5,000만원 한도에서 연 3% 금리의 조건임.
 - 이 두 사업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거의 동일하고, 지원방식도 점포 전세금 융자방식으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한도와 금리조건이 다름.
 - 이 두 사업을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따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통폐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적극 활용 필요
 - 창업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가장 앞서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여성경제인협회, 각 지방자치단체별 창업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수용자 대상별로 실질적, 입체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지원 창구를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 경쟁력 강화

I. SOC 민자사업 재정분석

- 2006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예산안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상에서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 예산과 관련한 쟁점인 운영수입보전지원, 건설보조금, 지자체민자유치지원 등과 관련한 재정지원, 사업기획, 사업비 심의과정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운영수입보전지원에 있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을 유연성있게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운영수입보전지원금을 산출 시에는 기준사용료를 조정하여 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함.
 - 운영수입보전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불합리한 수요예측, 과도한 통행료 책정, 민간사업자의 마케팅 활동 부재 등임.

- 건설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건설보조금 산정 시 법인세 변동분과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야 하며, 민자사업의 투자수익률 결정은 시장금리, 위험보상률, 평균수익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도 국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기간 중 물가의 변동으로 사업비의 증감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산정 시 시장금리와 민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이 연동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설보조금의 과다한 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균특회계예산배분과 관련한 지자체민자유치사업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과, 지자체의 재정적인 역량, 투자우선사업, 지역환경의 낙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야 함.
-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구조를 이해한 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대안을 도출하여 단위사업에 맞는 최적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의사결정단계는 크게 세 가지, 즉 사업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등의 단계로 구분됨.
- 사업비 심의과정과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에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투자법」중 제7조의2항을 개정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여야 함.

II. 신항만건설사업 예산안 분석

- 2006년도 신항만건설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1조 281억원임.
 -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울산신항개발사업으로 전년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천북항개발사업 18.3%, 포항영일

만신항개발사업 4.8%, 부산신항개발사업 4.5%, 목포신외항개발사업 4.2%, 평택·당진항개발사업 2.1%, 광양항개발사업 0.2% 순임.

- 2006년도 신항만건설예산안에서는 평택·당진항개발사업과 광양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가 조정되었음.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01년 91.4%, 2002년 86.6%, 2003년 89.7%, 2004년 80.1%로 지속적으로 악화됨.

- 예산집행부진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계약기간 부족, 동반이월, 순연이월 등 사업관리의 문제에서 발생함.
- 태풍이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예산집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성과계획서에 계획대비 공정, 항만시설 확보율, 입항선박의 체선율과 함께 예산집행률을 포함한 재정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인별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BSC)의 성과관리 지표에 예산집행률의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임.

□ 심각한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발생 문제는 제도적인 대책과 함께 현재 해양수산부 연구개발과제로 수행중인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개발, 체선예보시스템 등의 기술적 대책도 제도적 대책과 함께 병행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항만투자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획기간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추진하는 탄력적 항만투자계획 수립이 요구됨.

- 현재 수행 중인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용역」에서 재원 조달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개발시기 및 개발규모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컨테이너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이 과소평가되어 있는바, 기술수준 및 경쟁항만의 적정하역능력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하역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총사업비관리에 있어서는 물량증가나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최초사업비 대비 변경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상한선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제 3 부

부문별분석

통일·외교

I. 통일·외교 분야 재정분석

- 2006년도 통일·외교 분야 예산안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회의의 참여 증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분담금의 증액,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통일·외교 분야에서 예산소요가 가장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서, 2005년 7월의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의 합의사항 이행과 대북 전력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동 기금은 주변국 및 국제정세 그리고 정치적 변화요소에 따라 예산 및 집행실적이 크게 변동됨으로써 일관된 계획하의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동 기금 수요에 대비하여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2005~2009년도 통일·외교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어 2005~2009년도까지 통일 분야에 투자될 자금은 총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그 중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을 제외하고 경수로사업과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 기금에서 투자될 자금은 6조 2,400억원 수준임. 2005~2009년도 외교 분야 재정투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국제기구분담금, 대외협력지원 및 국제교류기금의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9.0%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2009년도 통일·외교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문제점으로는 통일부분 재정소요산출 실소요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 국제기구분담금 채납금 해소가 2011년까지 지연된다는 점, 공적개발원조의 통합관리 필요성 및 재외동포지원사업의 효율적 재원마련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2006년도 우리나라의 통일·외교 분야 예산안은 1조 5,942억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1조 4,624억원보다 9.0% 증가되었음. 이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확대, 통일부의 신규사업 증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금이 늘어남에 따른 것임.

- 통일 분야에 있어 2006년도 예산안은 7,210억원으로 2005년도 5,612억원 대비 28.5% 증가되었음.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2005년도의 5,000억원보다 30.0%가량 늘어난 6,5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도 큰 폭(218.3%)으로 늘어났음.
- 외교 분야의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 9,011억원에 비하여 3.1% 감소된 8,731억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은 APEC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5.0%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위상 및 외교역량의 강화를 위한 대외원조 및 국제기구분담금의 증액이 두드러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협력에 투입되는 자금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국제공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새터민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배분에 있어 시혜성 정착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직업훈련 및 취업능력개발의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현재 하나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거의 사회적응훈련 교육에 치중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능력개발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재외동포지원에 있어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주 수입원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 당초 한국학 연구 및 한국문화의 해외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인 국제교류기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 재단에 대한 지원은 이와 같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 방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 2005~2009년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재원배분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중장기적 시계의 국정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서 동시에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해주는 계획서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음.
 - 2005~2009년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병력운영부문, 전력유지 부문, 전력투자부문 및 병무행정부문의 연도별 투자규모와 연평균 증가율을 개략적으로 소개할 뿐 구체적인 재원배분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임. 실례로 전력투자부문에서 정부는 감시·정찰능력 향상,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전략적 타격 및 대화력전 능력구비, 구형·노후장비의 성능개량,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강화로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만 제시할 뿐 정작 확보대상 전력별 재원배분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통합재정의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원칙과는 달리 2005~2009년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기금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음.
 - 군인연금 급여의 재원배분도 걱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군인연금급여는 향후 군구조 개편으로 상당수의 직업군인이 퇴역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군인연금급여 증가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2005~2009년 국방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구도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음.

- 2005~2009년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투자 중점에서 장병사기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2005~2007년 기간동안 민간투자사업(BTL)을 활용하여 1조 7,700억원을 투자하여 1만 8,000세대의 군인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규모의 군인아파트 건립은 지금까지 건립보다는 매입을 적극 확대하여 향후 군구조 개편시 신축성있게 대처한다는 국방부의 기존방침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또한, 2005~2009년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재원배분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임.
 - 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미군기지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재원배분 계획이 없어 재정운용계획으로서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임.
 - 더 큰 문제는 이전사업의 재원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공여부지를 매각하거나 기타 각종 수입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공여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입장차이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 미군기지의 재배치와 이전계획의 확정에 따라 대규모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될 경우 이들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정치권에서도 반환기지의 무상공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임. 실례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주한미군이전때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이 그것임.
 - 이렇게 될 경우 반환공여지의 매각대를 주 세입으로 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는 심각한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바, 한미동맹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반환부지의 무

상양여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06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인건비 부족소요 환원에 따른 전력투자비의 대규모 잉여재원의 발생 가능성임.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매년 전력투자비의 남은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을 충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력투자비 재투자사업까지 추진해왔던 바, 2006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그간의 인건비 부족분의 87%에 해당하는 1,396억원이 환원되었기 때문임.
 - 둘째, 현역병 건강보험료의 대폭증가와 관련된 사항임. 국방부가 10년전부터 국방백서를 통해 ‘장병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민간의료 수준과 동일한 진료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해 왔고, 또한 이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시설이 장병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둘째, 현재와 같은 군 의료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임. 셋째,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넷째, 그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임.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006년도 국방예산안에서 2005년 대비 약 200% 증가한 123억 8,400만원이 반영되어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교육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 2006년도 교육 분야 재정 분석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현황과 국제비교,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6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분석하였음.
- 정부가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교육 부문에 대한 저투자와 투입재원의 저효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흡한 교육여건과 부실한 교육의 질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교육의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는 GDP 대비 7.1%이고 그 중 정부부담률은 GDP 대비 4.2%로 OECD 국가평균인 5.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민간부담률은 GDP 대비 2.9%로 OECD 국가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총 교육비 지출의 약 41%를 민간이 부담하는데 OECD 국가 평균 12.1%보다 3배 이상 높음.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공교육비 부담은 민간재원에 85% 이상 의존하고 있음.
 - 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교육 분야의 재정투자를 2005~2009년까지 연평균 7.1% 수준으로 증가시켜 5년간 총 157조 9,820억원의 교육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교육 분야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안정적이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5년간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 연도별 추진과제, 미래의 비전 등을 포함한 소위 교육정책제안서를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BTL 사업으로 당장의 투자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교육재정 확충의 시급성 때문에 민간자금으로 추진되는 BTL 사업규모를 교육예산에 포함시켜 교육재정의 총량을 확대해석하도록 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책정한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5.2% 재원배분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미래의 투자확대를 전망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잠재적 성인교육 대상자의 증가와 실업고의 위기에 대한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 내실있는 정책 수립이 요청됨.

-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2004년부터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결손은 지방교육의 사업비 부족을 초래하여 교육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교육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교육부의 당초 BTL 사업규모는 교육여건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선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재정투자규모를 과다계상 하였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재정투자 규모를 축소조정 하였음.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원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1% 표집에서 3% 표집으로 평가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의 성취도평가보다 풍부한 평가자료를 생산할 수 없다면 예산의 증가는 불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전국 수준의 평가를 2~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이양 실업교육 관련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2004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실업고 혁신방안과 관련한 예산(495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업계고교 교육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제2단계 BK2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2006년 초에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조정해야 함. 사업단 선정을 통한 지원대학의 수가 의도적으로 전국에 균등히 확산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의료, 경영 MBA 등 전문 서비스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계획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사업취지에 적합한지 않음.
-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 사업과 e-러닝 세계화 지원 사업과 같은 민간주도가 가능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관-연구소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는 GDP의 0.2% 수준에 불과하여 OECD 평균(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중 공부담 유아교육비의 비율은 31.8%(사부담 유아교육비는 68.2%)에 불과하여 OECD 국가의 공부담 유아교육비의 비율인 82.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연간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의 부담금이 공립유치원보다 7.8배 높은 실정인데 반하여 사립의 교육여건이 공립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급함.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5년간 총 3,975억원(국고 지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도시체험 방학캠프 운영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과 지역적 한계를 가진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사업 등 투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II. 대학 구조개혁 예산안 분석

- 2006년도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은 800억원을 계상함.
 - 2005년도「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은 10개 국립대학이 5개로 통폐합하기로 하여 500억원을 지원함.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51개 학과, 8개 학부, 7개 단과대학, 10개 대학원 감축과 그에 따른 입학정원 11,308명 감축 소요에 대한 300억원을 지원함.
-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으로 계상된 800억원 중 500억원은 2006년도에 소요될 전년도 계속 사업에 대한 지원액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2006년도 신규로 구조개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재원은 300억원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 신규 사업 재원 300억원은 초기 연도는 소규모로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통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어 예산안에 계상된 800억원의 재원이 2006년도 대학 구

조개혁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원 규모에 맞추어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예상되므로 대학간 구조개혁 사업을 사전 조정·통합하는 등 철저한 사전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그러한 계획에 맞추어 적정한 예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 구조개혁 지원과 촉진을 위한 제도보완 조치로서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는 대학교의 반발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문화·관광

I. 문화·관광분야 재정분석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화·관광분야 재원배분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매년 약 2,000억원 정도 확대된 규모로 계획되었음.
 - 이것은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문화관광부의 중기 정책과 일관성을 갖는 중기 재원배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금 정비에 따른 재원 배분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국고성 사업의 기금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국가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문화·관광분야 재정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06년도 문화관광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16.3% 증가한 1조 3,77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총 6개로서 총 운용규모는 1조 7,794억원으로 계획되었음.

- 2006년도 문화관광부 신규사업 중 ‘윤이상음악당 건립’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거 집행부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은 전년대비 약 14.1% 증가한 3,93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사업 구성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사업의 역할과 효과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구성이 필요함.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결산 시 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 2006년에 추진할 문화·관광분야의 BTL 사업은 총 3,037억원 규모로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BTL 사업은 사업 착수 시기의 예산안 심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민간협약에 의해 국고지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는 별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지역별 분포와 수요, 적시성, BTL 방식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문화·관광분야 중기 재정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지원 규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의 조기 공급에 따른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사회복지

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 2006년에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정부 총 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는 시대를 맞게 됨.
 - 2006년도 복지재정지출 수준을 OECD 국가(평균) 중앙정부 복지재정지출 수준과 비교하면 약 54% 정도이지만, 2006년 복지재정에 새로 포함된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42% 수준임.

- 2006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소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계획은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총 17조 95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4.5% 증가함.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정부 총지출 6.3%, 사회복지·보건분야 9.2%, 보건복지분야 12.9%로,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남.

- 2006년 16조 5,0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재정 운용구조상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운용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예산은 약 89%의 높은 수준임. 이러한 재정지출 구조로 인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 등 재량지출사업 예산이 매우 축소되고 있음.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예산이 5조 9,00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주요사업비의 63%에 이르고 있음. 의료보장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정책적 접근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함.
- 2006년 5조 3,700억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생계급여 162만명, 의료급여 180만명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차상위계층조사’에서 기존수급자의 1.9배인 263만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빈곤층으로 나타남.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가 상당부분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음.
 - 2001~2005년간 실적에 의하면 기초생활급여비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평균 7% 정도 초과함. 2006년에는 매년 법정급여비 부족액을 예비비 지출과 추경 등으로 충당해 온 문제를 시정하여 예측력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재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과 의료급여를 위하여, 예산 5조 8,77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1,491억원의 총 7조 262억원이 지출됨. 이에 따라 의료보장 지원재정 규모, 연 18% 수준의 빠른 증가속도, 담배부담금 지원의 부적정성 등이 문제시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설치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응 및 아동·노인복지 관련 재정은 2006년 4,889억원 규모에 불과함. 범정부적 조직으로 동 본부가 설치되었지만, 재정규모는 기존 조직에 의한 사업 수행과 차별화되지 않음. 이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에 토대를 둔 명확한 정책과제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채, 방대한 조직 신설이 이루어진 사례로 지적됨.
 - 특히 260억원에 불과한 저출산 대응예산의 82%를 15,000명 대상으로 고가 시험관야기 시술비에 지출하는 재정운용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우선순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함.

- 2006년도 장애인 복지재정은 예산 5,502억원, 기금 3,020억원으로 총 8,522억원이며,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8%에 불과함. 장애인 복지 정책 수행은 8개 부처와 1개 위원회의 다원화된 정책구조와 10개 회계·기금이 관련되는 복잡한 재정구조를 띄고 있음.
 - 장애인정책과 재정사업을 총괄 기획·조정·평가하는 ‘Control Tower’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하고, 「장애인복지특별회계」(안)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확충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
 - 2006년 정부가 역점을 두는 13만명 대상으로 2,900억원이 투자되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와 역량 부족임.

- 2006년도 식약청 예산안은 1,486억원 규모로, 정부 총 지출의 0.07% 임. 그러므로 정부가 4,800만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은 인구 1인당 약 3,000원임.

- 2005년에도 불량만두, 중국산 김치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며,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재정계획을 통하여 개선되어 나가는 성과는 찾기는 어려움.
 - 2006년도 예산안에서 식품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예산 1.6억원 감소,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5억원 감소 등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으로 지적됨.

- 2006년도 식약청 세입예산은 66억원이며, 이중 39억원이 ‘수입식품검사 수수료’ 세입임. 식약청이 식품·의약품 허가 및 검사관련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세출예산의 확충 못지않게 중요함.

- 최근 3년간 미국 FDA 예산구조를 보면, 연방정부예산과 의약품분야의 사용자 부담금 재원(user fee)이 약 '85 : 15'의 비율임.

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노동분야 재정지출규모는 2005년 7조 8,341억 원, 2006년 9조 3,678억원, 2007년 9조 8,992억원, 2008년 10조 7,080억원, 그리고 2009년 11조 6,658억원으로 5년간 총 49조 4,749억원 규모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 연도별 총 재정지출규모와 4개 개별사업의 지출 규모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재정지출규모를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노동부 재정사업 중 기금사업의 운용비중이 91.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과 기금을 통한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기금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각각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노동재정 투입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취업계수,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 청년실업률, 고용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성과목표의 달성과 재정지출과의 연계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노동분야 2006년도의 투자규모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8조 5,211억원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9조 3,678억원으로 8,467억원이나 증액변경 되었음.
 -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투자계획이 구속력이 없어 매년 큰 폭으로 변경된

다면 중장기적 노동 재정사업의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것임.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각 연도별 총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재정운영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06년도 노동부 기금의 사업비 지출규모는 세출예산 규모의 10.7배에 달하고 있음.

- 노동부의 재정은 예산보다 기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기준을 마련해야 함.
- 노동부의 기금사업 지출은 거의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보험기금은 주재원을 민간이 납부하는 보험료수입으로 하므로 기금지출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증가하여 민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노동부의 2006년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사업 예산액은 2005년도의 5,187억원 대비 60.0% 증가한 8,297억원이 편성되었음.

-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사업은 2006년도에 2005년도의 3,187억원 대비 98.4% 증가한 6,322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의 대폭 편성에 기인함.
 - 신규사업은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사업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6년도에는 517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대상인원 등 양적으로는 확대하였지만 일자리의 질적 제고는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 2006년도 노동부의 회계·기금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총 예산안은 2005년도의 9,887억원 대비 19.2% 증가한 1조 1,789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 농특회계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고용 촉진훈련은 대상지역만 구분될 뿐 사업방식, 훈련기관, 훈련수당 등 비용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없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는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민간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관리 운영비 등 훈련관련 간접비용이 과다 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은 2000년 이후 매년 큰 폭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적립금이 거의 소진되고 있음.
 - 의무고용에 기반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추가비용만을 조정금 형식으로 한정·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임금보조 또는 경증장애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재정 등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6년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대위변제금지급은 185억 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 대위변제 지급액은 2002년의 3,800만원에서 2003년 60억 7,800만원, 2004년 170억 1,300만원으로 급증하여 기금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위변제 지급액의 감소와 함께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대위변제금이 효율적으로 회수되어야 함. 아울러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방안의 강구가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됨.

III. 보육정책과 보육재정 분석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육분야 재원배분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투자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확대되어 연평균 21.2%로 확대될 계획이며, 보육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 정부 내 보육정책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재정 당국 간의 일관된 보육분야 중기 투자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재정 투자 소요의 변화와 재정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보육비용의 가구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과 취업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6년도 보육분야 예산안은 여성가족부가 7,928억원, 교육인적자원부가 2,069억원, 농림부가 233억원, 노동부가 1,784억원 등으로 총 1조 2,014억원이 편성되었음.
 - 중기 재정운용 하에서 보육분야의 재원 배분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아동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며, 자치단체의 보육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평당 건축단가와 지원 시설 규모 등의 현실화가 필요함.

- 부처간 통합·조정된 보육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협력이 필요하며, 집행실적이 낮은 노동부 소관 직장보육시설 지원 및 육아휴직 지원, 농촌지역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농림부의 사업 등을 포괄하는 일관된 보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환 경

I. 환경 분야 재정분석

- 2006년도 환경부 재정규모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합해 총 3조 6,887 억원으로 이 금액은 2005년도 재정규모 3조 4,634억원에 비해 6.5%가 증가한 규모임. 2006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조 45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가 증가한 규모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6,42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가 증가한 규모임.

- 2006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일반회계전입금 비중이 59%에 해당하는 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용해야 할 것임.

-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환경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재정 규모를 대폭 늘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05 ~ 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부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7.8%로 정부전체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 6.3%에 비해 1.5%포인트가 높아질 것이며, 2005년 기준으로 환경부 예산규모는 GDP의 0.42%, 정부전체 예산 대비 2.13% 수준임.
 -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감안할 때 교통

세 세수를 환경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25개의 환경부 소관 부담금 중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은 21개임.
 - 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 부과율 산정, 징수실적,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징수실적이 미미하고 환경개선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축산배출부과금,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용부담금, 원상회복예치금,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협의기준초과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부과대상 선정, 부과율 산정, 징수실적 등에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006년도 상하수도·수질 부문의 개별사업 예산안은 중기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분석됨.
 - 수질 부문은 「물관리종합대책」과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2005년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행될 후속적인 물관리종합대책에 근거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06년도 개별사업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상수도 부문 역시 대부분의 개별사업의 지원근거가 「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점검과 조정 없이 개별사업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내륙 농촌과 연안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기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06년도 환경부 세출예산안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융자방식으로 집행되는 지방상수도 보급 및 시설개량사업 예산은 지자체의 융자기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용자방식에서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폐기물 부문의 예산은 2004년도부터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05년까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매립시설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4.1%이고, 소각시설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33.3%에 불과한 실정임.
 -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16.5%가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목표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낮은 국고보조율, 님비현상으로 인한 입지선정 난항,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들 사업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행정절차 문제, 사업공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이외에도 시설설치비 및 주민지원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개선을 위해 현재 30~50%인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 예산안은 총 2,129억원이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조한 집행률, 국고보조율, 차량소유자 자부담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사업은 2005년도 6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집행실적, 집행전망, 국고보조율, 차량소유자 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2006년도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제 집행 실적(2004년 40%, 2005년 6월 현재 10.5%)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사업 준비부족에 기인함. 따라서 이 사업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타당성 점검과 국고보조율 증가를 통한 지자체 재정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국립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조 9,490억원을 투입하는 국립공원사업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국립공원사업에 대한 투자는 2005년까지 2,733억원이 이루어 졌고, 2006년도 투자 686억원을 합하면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11.6%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사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국립공원의 훼손면적은 2백만㎡로 추정되지만 매년 2만㎡ 정도가 복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이 39.1%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이 2006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산업·중소기업

I. 산업 분야 재정분석

- 산자부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재원변경 문제
 - 정부는 정부예산을 통한 R&D투자 확대가 세입감소, 복지지출 등 경직성 세출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를 통한 R&D예산의 획기적 확대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2006년 R&D 투자 확대는 과학기술부 소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산업자원부 성장동력개발사업 등 총 2,700억원의 국채발행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R&D 속성상 출연금의 직접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R&D 사업은 기금보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R&D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기술료 등 유무형의 성과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의 조정문제
 - 산업자원부는 2006년부터 예특회계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전력분야는 여유재원을 보유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관하여 지원할 계획임.
 - 기후변화협약 발효,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을 위한 세출수요가 급증하여 재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06년말 여유자금규모가

6,264억원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의 33%로 과도하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전력부문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다만, 내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급속히 줄어들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기금의 부문별 세출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타부처 소관사업비의 증가문제

- 최근 5년간 에특회계에서 차지하는 타부처 소관사업비가 에특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 5.7%, 2003년 6.7%, 2004년 10.9%, 2005년 13.2%로 급증하였음. 그리고 2006년도에는 12.2%가 지원될 예정임.
 - 에특회계의 목적이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에특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부처 소관사업비는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기반조성사업 분석

- 현재 산업기반조성사업은 장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채용 등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동 센터가 기업지원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59명의 산업기술인프라 평가위원 pool 구성을 완료하였으나, 기술의 전문화 및 세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평가위원 pool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석유비축사업 분석

- 우리나라의 석유비축현황을 보면, 정부 7,445만배럴(56일분)과 민간 8,446만배럴(59일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 115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기준인 90일을 초과하는 물량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원유비중이 3.8%로서 매우 낮다는 점, 중동의존도가 78.1%로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원유수송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석유비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비축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1억 4,100만배럴의 비축 목표 중 국제공동비축에 의한 목표량 2,400만배럴과 비축유 트레이딩에 의한 목표량 600만배럴을 제외한 1억 1,000만배럴의 비축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 4,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지난 3년간 비축유구입 평균예산이 683억원임을 고려할 때 제3차 비축계획의 적기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3차 비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개발사업 분석

- 동 사업의 2003년 집행율은 98%, 2004년도는 87%, 그리고 2005년 8월 말 현재 집행율은 31%로 나타나 집행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집행부진에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지역별로 그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즉 백화점식 사업추진과 시범보급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지역별 시범보급위주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형기획사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의 Road-Map 구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임.

□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예산 분석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세부사업별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폐지하고 전체 상한선만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신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외개척요원양성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개척요원양성사업이나 동 사업의 미취업자가 창·취업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한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비율은 창업 및 수출초보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창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낮추고, 수출확대기업 및 수출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I. 농어촌 분야 재정분석

□ 농어촌분야 재원 총량 확보 필요

- 농어촌분야 재원 총량은 2005년도 14조 1,268억원에서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도 15조 8,028억원으로 증가할 계획임.
- 국가재정(통합재정 기준)에서 차지하는 농어촌예산의 규모는 2005년 6.8%에서 2009년 5.9%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농림어업GDP비중 대비 농어촌예산비중의 크기는 2005년 1.9배에서 2009년 2.2배로 증가할 계획임.
- 주요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일본 2.0배(2004년), 미국 3.7배(2002년), 영국 1.3배(2000년), 독일 4.2배(2000년), 프랑스 1.7배(2000년)임.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한 농어촌분야의 재원배분 규모를 확보하여야 주요선진국의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 해양수산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편성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음.
-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실집행률이 0%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이 다수 존재함.
- 특히 해양생물연구센터설립사업의 경우 사업의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03년, 2004년도에는 0%이었고, 2005년도 6월말 현재의 집행률은 8.6%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지자체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실적 부진과 사업 축소 필요

- 대구회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간척사업(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과 같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은 1994년 계획 당시 목표 대비 실적은 저조한 편임.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예산에서 향후 1조 5,036억, 서남해안 간척사업은 향후 1조 4,066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쌀의 과잉재고가 심각한 수준인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기반조성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은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관련된 2006년도 예산 규모는 2005년도에 비해 12.9% 증가한 약 1조 4,026억원임.
- 농산어촌의 기초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예산의 증가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실시하는데 앞서 개선할 점이 있음.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득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옮겨야 하며, 부처간 중복을 피하면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제도임.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6.0% 증가한 566억 9,000만원임(재보험기금 출연금을 제외할 경우 2005년 대비 141.6% 증가).

- 많은 농가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상품목 확대할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보험확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복숭아, 포도, 감귤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함.

□ 가축분뇨 자원화와 연계된 친환경농업육성정책 관련 예산 확대 필요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13.3% 증가한 약 4,375억원임.
- 양분총량규제가 없는 가운데 화학비료 투입과 부적절한 가축분뇨관리로 토양·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임.
- 자원화한 가축분뇨의 수요처인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II. 직접지불제사업 예산안 분석

□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예산확보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05년도 8,031억원, 2006년도 9,6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
- 2005년산 산지 쌀값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쌀값 하락 정도에 따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의 소요예산을 추계해 보았음.
- 2005년산 산지 쌀값이 2004년산 대비 12% 하락할 경우 6,379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전망이다.

- 그리고 2006년산 산지 쌀값이 2005년산(2004년 대비 10.0% 하락 가정) 대비 2% 하락할 경우 4,574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전망이다.

□ 경영이양직불제와 연계된 영농규모화사업 재검토 필요

- 2006년도 경영이양직불 예산은 2005년도 대비 39% 감소한 약 175억원이 책정되었음. 감소한 이유는 지원 단가가 낮아 신청량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임.
- 경영이양직불제는 영농규모화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원 단가가 낮아 고령농가가 스스로 경작하거나 일부작업을 위탁하여 획득할 수 있는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유인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
- 경영이양직불제와 연계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쌀소득보전직불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사회간접자본

I. 사회간접자본 분야 재정분석

□ 문제제기

- 정부는 1982년부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하여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으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목표와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게 됨.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과 2006년도 예산안은 공통적으로 도로의 비중은 대폭 줄이고, 철도의 비중은 소폭 줄이고, 항만 및 공항 등의 비중은 소폭 늘리고, 그리고 수자원의 비중을 줄이는 것임.
- 여기서는 ①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 분석, ②2006년도 예산안 분석, ③항만 및 공항 민영화 검토, ④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 분석, ⑤정부투자기관의 예산사업 분석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지만, 민자 및 공기업 투자를 포함하면 증가율이 4.6%임.
 - 둘째, 수송·교통 분야의 증가율은 0.4%인데 비해 지역개발 분야는 6.3%임.

- 셋째, 투자가 감소하는 부문은 수자원(-2%), 도로(-1.9%), 산업단지(-0.7%)이고, 투자가 증가하는 부문은 지역 및 도시(30.1%), 항공공항(16.5%), 물류 등 기타(9.8%), 해운·항만(4.1%), 철도(0.4%)임.
-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 총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1.9%, 독일은 2.4%, 프랑스는 0.8%, 영국은 0.8%, 캐나다는 1.9%, 우리나라는 2.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둘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연구인 Aschauer(1989), Morrison and Schwartz(1996), Holtz-Eakin(1994) 등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그 연관성이 모호하거나 과대 추정되었다는 등 논란이 많음.
 - 셋째, 특정 분야 투자 총량의 적정 규모는 경제학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특정 분야 배분은 ‘정부의 철학’을 나타내므로, 정오 판단이 불가능함.
-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대체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영국은 197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 재정부담을 이연하고자 1980년대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1990년대에 민자유치를 도입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영화와 민자유치가 추진되어 성공했음.
 - 둘째,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민자유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로서는 ‘필수의 문제’임.
 - 셋째, 최근에 우리나라는 BTL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최근 겪고 있는 문제들은 ①대상사업의 선정, ②중소건설업체의 참여, ③재정부담의 증가 등으로 민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 영국 사례를 점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영국 민자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요건은 ①주무관청에서 사업관

리 능력의 확립, ②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사업내용 및 시행조건의 명확화, ③민간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사업내용으로 설계, ④주무관청이 발주 전에 민간 컨설팅 용역의 적극적인 활용, ⑤주무관청과 사업자의 리스크 분담의 명확화, ⑥사업 제안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의 명확화, ⑦성과 수준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의 도입, ⑧인센티브 조항의 설정 등임

- 사회간접자본 분야 성과평가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수행하므로, 경제성 지표나 능률성 지표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지표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특정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과평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 투입·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과목 체계(장·관·항)를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로 전환하므로 프로그램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06년도 예산안 분석

-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교통부 소관의 예산은 2005년에는 18조 899억원, 2006년에 17조 4,493억원으로 계상되어 전년에 비해 -3.5% 비율로 6,406억원이 감액됨.
 - 둘째, 전년과 대비하여 증액된 부문은 광역교통(10.6%), 항만(1.1%)이고 감액된 부문은 수자원(-12.6%), 철도(-7.4%), 도로(-4.2%), 공항(-3.9%)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2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

관으로 열린 ‘특별회계·기금 정비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통 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기한만료와 함께 폐지되기로 결정됨.

- 둘째, 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와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 셋째, 향후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은 ①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각종 기본계획의 충분한 고려, ②민자유치에 있어 이용자 및 수익자가 부담의 원칙 지향, ③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교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사업의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물류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도 중요하지만 일단 항만이 더욱 중요하므로, 컨테이너물동량 중심 선로에 대한 향후 전략을 수립해야함.
 - 둘째, 상하이와 항만 및 공항을 확충함에 따라 중국 물류시장은 남동부(홍콩, 선전 등), 중동부(상하이 등), 북동부(칭다오, 톈진, 다롄 등) 3개축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북동부 지역과 연계하고 경쟁하는 전략을 추구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사업의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교통부 소관 2005년 예산은 1조 4,154억원, 2006년 예산안은 1조 5,713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1% 증액되었음
 - 둘째,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합당하지 않는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수행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저상버스도입 보조,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비, 토지관리 등은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혁신계정의 사업이 건설교통부 소관 연구개발(R&D) 2006년도 예산안의 1.4%(40억원/2,960억원)로 아주 미미하므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간접자본의 각종 기본계획,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함
 - 첫째,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은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어야 함.
 - 둘째,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기본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공항개발증장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
 - 셋째,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모든 기본계획에는 성과평가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사업평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함.
 - 넷째, 공공교통시설은 수요추정을 통해 재원을 추정하게 되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므로, 수요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산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조달, 사업시행주체 등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규에만 명시되었지만,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모법인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지 않고 있음(예를 들면, 왜 한국도로공사가, 왜 국고 50% 지원 방식으로 고속도로 건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가 등의 문제임).
 - 둘째, 기존 예산사업 및 향후 예산사업, 민영화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현안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회계법」에 설치하거나 「예산사업추진체계심의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예산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시에 협의하는 절차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

I. R&D 분야 재정분석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계획기간 중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3%를 상회하는 9.2%의 증가율로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임.
 - 재정의 총지출 대비 R&D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05년도 3.7%에서 2009년도에는 4.2% 수준으로 증가될 계획임.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두 계획의 비교가 가능한 기간인 2005년~2008년의 기간동안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1조 4,629억원 증액되었음.
 - 예산에 의한 투자는 축소되었으며, 기금에 의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향후 재원의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예산 중 R&D 예산을 7%로 확대하겠다는 2002년 대선공약 및 정부예산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2008년까지 8%로 확대하겠다는 2004년도 총선 공약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

-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비 재원 중 정부·공공재원의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며,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

- R&D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R&D 체계를 선진화하여 R&D 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년도의 계획에 비하여 국책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대신 연구기관운영지원 및 대학연구지원은 증가폭이 줄어들었음.
 - 연구개발 재정투자의 확대가 연구기관 및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쪽 보다는 연구개발 과제 자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임.
 - 연구개발과 관련한 연구기관과 대학간, 연구기관간, 연구원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R&D 분야 투자재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구인력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PBS 제도의 개선 등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06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재원투입 확대에 힘입어 요구액 대비 95.9%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2004년도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R&D 예산의 조정·배분을 수행한 첫 해라고 볼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R&D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는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다만, R&D 사업의 성과평가는 해당 분야 전문가 풀의 한계로 인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과 성과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기초·원천 연구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할 계획과는 달리,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대학연구지원 항목은 전년도 계획보다 줄어들었음.
 - 각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개발 단계별로 연구역량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15.0% 증가시켰음을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사업비의 R&D 전환에 따른 영향이 포함된 수치임.
 - 2006년도 예산안에서 일반사업비의 R&D 전환 규모는 2,838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R&D 투자는 11.4% 증가한 것이 됨.

- 과학기술부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갈릴레오 프로젝트 사업은 관련 환경 정비 이후 예산안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원화를 위하여 EU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미국의 반대에 의하여 민간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추진중임.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동 프로젝트의 참여를 결정하였으나, 프로젝트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최소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출연금의 규모 등은 EU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동 사업 관련 예산은 공식협정 체결 이후 또는 체결이 가시화되는 2007년도 이후에 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동 프로젝트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사업이므로 우주기술로 인식되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가 참여하는 분야는 갈릴레오 위성의 발사 및 관제 등의 분야보다는 위성신호의 수신과 이용에 관한 분야이므로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계획기간 중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3%의 절반 수준인 3.2%의 증가율로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임.
 -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의 2/3 이상을 예산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임.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두 계획의 비교가 가능한 기간인 2005년~2008년의 기간동안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1조 1,322억원 증액되었음.

- 정보화 분야내 부문별 투자계획의 특징으로는 산업정보화 지원 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여 재정투자는 축소할 계획이며, 전자정부 구현 분야 역시 2007년 이후에는 재정투자 증가가 거의 없음.
 - 전자정부 사업은 개별 업무의 온라인화와 민원서류 발급 자동화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업무재설계를 통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부처간 정보공동활용 및 연계 확대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 고도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전자정부 고도화 사업이 다부처 연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는 전년도 계획에 비하여 투자계획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는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보화 분야 예산이 52개 중앙관서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관하여 심의·조정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유사업무에 대한 기관간 중복투자 등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미국의 OMB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를 참조하여 정보화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의 기구에 부여하고, 이를 보좌할 조직을 설립하는 등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u-IT 허브 구축 사업은 RFID/USN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를 인천 송도 지역에 구축하고, 관련 선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2004년도에 수립한 「동북아 IT허브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안에서 밝히고 있는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총 사업비의 48.9%~71.3% 수준에 불과함.
 - 기본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는 8조 8,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1조 315억원임.
 -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u-IT 허브 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는 3,697억원에 불과하며,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2005년 10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며,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사업의 진도를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지원은 2006년도 예산안에 3,057억원이 편성되어 2005년보다 38.8% 증가하였음.
 - 전자정부 사업은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추진체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현행 추진체계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경우 부처갈등시 조정력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경우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총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며, 잦은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추진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음.
-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및 국민의 정부 시기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체계를 감안할 때,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일반행정

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법원·헌재, 경찰, 해양경찰, 소방방재, 법무 및 검찰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하나의 재정분야로 분류하였다면 각 부문별 목표나 방향 이상의 그 분야의 재정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나 각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바,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인력활용계획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장기적인 계획, 인적자본에의 투자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을 연계·분석해보면,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수사의 과학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7.4%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됨. 또한, 2006년도 신규사업인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중 법무부의 10억원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분류하지만 복권기금의

31억 3,800만원은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재정의 범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음.

□ 사법개혁제도 관련

-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된 정책변화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의 제시와 더불어 충실히 재정투자를 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2006년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도 3월부터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계획의 경우 2006년도에 인적·물적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정부는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안이 연도말에 통과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범죄피해자지원의 경우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고등법원 상고부 역시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관련

- 사법시험선발인원의 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로 볼 때, 현행의 사법시험제도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성격이 더 명확해지게 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도 이제 변호사 양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바, 현시점에서 이들에게 공무원의 자격을 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6년부터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총 2,497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안)」이 연도말에 국회에서 통과 될 경우 2006년 하반기에 일부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에 있으나, 관련 경비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음. 이 역시 예비비를 사용할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바, 동 경비의 2006년도 본예산안 반영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자치경찰 인건비(3,287억 7,800만원)를 국가 지원 기 확보액(국가 경찰에서 전환되는 3천명분: 약 1,541억 6,800만원)으로 보전 후, 나머지 인건비 부족액(약 1,746억 1,000만원) 및 사업비(820억 800만원)를 국가가 지원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정함이 없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향후 재정부담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부를 자치경찰의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귀속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2003년도 1조 2,387억원, 2004년도 7,379억원, 2005년도 6,261억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6,69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정부는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범칙금·과태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자치경찰 운영을 통한 범칙금·과태료 수입이 전부 자치경찰의 자치단체분의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칙금·과태료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게 될 것인바 일반회계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상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하고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시키기가 곤란하여 동 수입들이 반드시 자치경찰의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수사의 과학화 관련 예산안

- 국과수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으로 있음에 따라 국과수 예산이 행정자치부 예산 중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음.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하에서 부처별 예산상한이 정해지고 각 부처는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자원배분을 하게 되나 행정자치부소관의 전자정부, 지방재정, 민주화운동보상 등 중점 추진분야에 비해 국과수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나 비중면에서 높게 책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수사의 과학화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게 됨. 국과수 예산을 현행과 같이 행정자치부소관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수사기관인 경찰청 또는 검찰청소관으로 할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감정·감식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의 소관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과수는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의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범죄의 증거자료가 이미 상당부분이 디지털 영역에 있음에 따라 증거수집활동 즉, 수사활동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분야에 대한 R&D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고가에 구입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도 해외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과학적 수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 분야 R&D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예산안

- 신고포상금은 최근 각 부처가 도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규제행정기관의 정책집행수단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집행실적 및 집행부진사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06년도 예산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23개 부처, 49개 신고포상금은 2003년도 50.01%, 2004년도 48.41%, 2005년도 8월 현재 27.84%의 평균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이 부진한 신고포상금 중 보건복지부의 재정기여보상금, 국세청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산림청의 산불신고자포상금 및 산림법위반신고상여금 등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또한, 감사원의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신고포상금, 병무청의 병역부조리신고포상금,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신고포상금 등은 20%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당한 사람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요하게 되나 현재까지 다수의 신고포상금이 법적인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법적인 근거없이 운영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그 계상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제 1 부

총괄분석

I.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기금운용규모는 2006년도에 총 358조 5,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으로는 38조 8,480억원, 증가율로는 12.1%가 각각 증가되었음. 2002년도 대비 금액으로는 213조 7,760억원, 증가율로는 147.6%가 각각 증가되었음.
 - 이에 따라 2002~2006년의 동안 기금운용규모는 재정규모 대비 83.5%에서 176.5%로 93%p 상승했고, 경상GDP 대비로는 21.1%에서 39.6%로 18.5%p 상승했음.

- 기금수입 중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자체수입은 5년 동안 총수입에서 25~36%대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2002년도의 36.2%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
 - 정부내부수입은 동 기간에서 21~29%대의 비중을 보이면서 2002년도의 21.4%에서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금지출 중 ‘정부내부지출 등’은 2002~2006년 동안 38~46%대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가운데 2004년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 사업비의 경우 20~27%대를 나타내는 가운데 2003년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낸 반면,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운용비는 동기간 동안 30~35%대 및 0.6~0.9%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06년도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액 중 기금비중은 전체가 24.8%(예산 75.2%)로서 전년대비 1.3%p 가 상승한 가운데 재정지원금액이 큰 사회복지·보건, 일반 공공행정,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등 주요 5개 분야(금액 기준)의 기금비중 변화는 각각 6.2%p, -3.3%p, -0.1%p, -0.1%p, -0.7%p를 나타냈음.

- 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 분야는 전체 14개 중 수송·교통·지역개발, ‘지방재정 및 국가균형발전’, ‘공공질서 및 안전’의 3개 부문으로 21.4%를 차지했음.
 - 2004~2006년 동안 자체수입의 47~51%대를 차지하는 부담금은 2006년도 비중이 2005년도 및 2004년도에 비해 각각 0.7%p 증가 및 2.7%p 감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 부담금은 실제로 조세부담과 유사한 준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부담금 정비방향」과 함께 수입구조에서의 ‘부담금 감소와 자체수입 증가의 동시 충족’이라는 상충관계(trade off)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출측면의 여유자금운용 비중은 2004~2006년에 걸쳐 30%대를 약간 상회하여 등락(31.6%→35.2%→33.0%)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사업비 비중(25.1%→22.0%→20.3%)을 상회함으로써 여유자금운용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행으로 기금과 예산이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목적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및 역할분담을 통한 기금·예산사업의 효율적 조화가 중요하고,
- 이의 달성을 위해 예산총액배정·자율편성(Top-down)제도와 예산사업 구성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포트폴리오(portfolio) 예산편성」의 결합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구조를 시도할 수 있음.

제 2 부

중점분석

I. 기금 정비의 추진현황과 과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방안」은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금제도의 정비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정부의 기금정비방안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의지가 필요함.

- 기금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함.
 - 민간자금화될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공공재원의 투입이 재정운용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공공재원이 투입된 민간자금에 대한 재정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폐지대상 기금인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기존 용자사업이 일반회계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에 있는데 이차보전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금’은 폐지 후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 내의 계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므로 문화관광부 및 중소기업청 등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
 - 폐지 기금의 일부 사업비 절감분과 적립금 잉여금의 처리와 활용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폐지가 유보되었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은 기금 존치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었음.

- 차기 존치 평가 시에도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금 정비 방안 원칙에 따른 예산과 기금의 사업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정비방안에서 직접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기금 정비 방안시 검토할 과제를 제안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통폐합 문제가 유보되었지만 통폐합의 찬반양론을 분석·평가하면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논의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통합예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기금의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야 함.
 - 군인복지기금은 군인복지의 큰 틀에서 군인연금기금에 통합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기금 융자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의 예산과 타기금간 유사·중복성 문제에 대해 기금의 설치목적을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그러나 외형에 치중한 실익이 별로 없는 통폐합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현재 기금 존치평가의 체계에 있어 평가대상 기금의 범위,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의 산정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II. 기금결산 심사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 연계 분석

- 국회는 2004년도 기금결산심사결과 전년도보다 3건이 증가된 6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는 바, 이러한 시정요구사항 중 기금운용계획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과제가 있음.

- 기금용자사업의 집행부진 관련
 - 2004년도 및 2005년도 8월말 현재 실제 용자사업자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중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05년도와 대비하여 규모가 증가된 사업으로는 통일부소관 남북협력기금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 대출사업(7.8% 증가된 1,672억원), 국방부소관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원자재비축지원사업(32.4% 증가된 64억원), 해양수산부소관 수산발전기금의 해면양식시설사업(13.2% 증가된 64억원), 내수면양식시설사업(150% 증가된 35억원),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사업(50% 증가된 120억원), 가공시설현대화사업(48.8% 증가된 50억원) 등 6개 사업이 있음.
 - 동 사업들은 신청소요를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신청소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수산발전기금사업들의 부진사유였던 용자사업자의 담보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나 원자재비축사업의 부진사유였던 사업의 장기간 소요 및 하반기 집행이 해소되었다는 명확한 근거없이 신청소요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동 사업들의 집행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집행부진 사유별로 유형화해보면, 용자사업자의 담보력 부족, 신청저조, 관련사업의 일정지연,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4년도 기금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는 기금용자사업의 집행부

진을 해소하기 위해 용자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용자조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관련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이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자체변경”하는 것은 이미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그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자체변경권의 범위내에서는 국회의 심의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음.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정부는 주요항목의 30%의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신규사업을 연도 중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및 재정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질서에 부합되지 못하게 됨.
- 기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는 것이 기금관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 규정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2004년도 기금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국회에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사유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겠음.

□ 수입 및 여유자금 관련

- 정보통신진흥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신규재원에 대해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 기금의 중기(2004~2008)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순조성 규모는 2003년

2조 255억원에서 2008년에 1조 486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으로 재원확대의 제한과 지출소요의 증가로 2005년을 제외하고 기금수지의 적자가 지속되어 순조성 규모는 2004년~2008년간 6,69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이를 볼 때 2004년도 기금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 주문한 신규재원을 조속히 발굴해내지 못할 경우 동 기금의 재원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심화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화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지출계획안에서 제시되는 여유자금운용규모는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연간 총수입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누적적립금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다시 말하면, 수입·지출계획표는 당 회계연도의 자금흐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유량(flow) 기준의 자료이나, 연금급여 등 사업비의 지급 여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저장(stock) 기준의 새로운 여유자금의 개념이 필요하게 됨. 또한, 순조성액은 기금의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부담금·전입금·운용수익 등의 단순합계에 불과하여 동 기금의 경우 연금지급여력으로 볼 수 있는 여유자금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 따라서 현재 기금운용계획표상에서는 누계액 기준의 적립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속서류에 순조성 규모 정도가 누계액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질적인 여유자금의 운용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결산 혹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서류에서는 기금의 실질적인 여유자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는 국민연금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에 해당되는 사항임.
-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적립금 추정규모는 2005년도 대비 2.1% 증가되고 있어 적립금 과다적립 문제를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음. 보험료율과 관련하여 현재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06년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바, 2006년

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었고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책임준비금 과소적립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의 책임준비금 규모는 2조 5,703억 3,700만원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책임준비금 추정액 4조 7,077억 6,300만원보다 2조 1,374억 2,600만원이 여전히 부족하 것임.

□ 기금운용계획 편성방식 관련

- 복권기금 임의배분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점유비율이 2004년도 30.0%, 2005년도 17.6%, 2006년도 22.5%로 연도별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등 사업집행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에서는 법정배분사업의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법정배분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2003년 11월 1일 개최되었던 제7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복권수익금 70%의 배분시 임대주택건설에 대부분을 배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실무 협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었음. 이로 인해 2003년도에 국민주택기금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총 수익금의 29.2%였으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48.8%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의 편성은 다른 임의배분사업의 배분비율을 당초 법취지보다 축소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입법취지 부합여부 관련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경륜·경정수입금의 목적사업인 자전거·모터보트 레저장비산업발전에 대한 지원비율 및 금액은 2004년도 0%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4.8%에 해당되는 1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2006년

도에는 21.2%에 해당되는 20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경륜·경정법 제15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타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 SOC투자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도 4,450억 원대비 79.7%가 증가된 8,000억원으로 계상되고 있음. 국회 시정요구사항에서와 같이 동 사안은 BTL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이므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법 제83조제2항제7호 “그 밖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조동항제2호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인 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의 SOC투자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개정안의 개정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III.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신용보증 관련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배경을 살펴보면,
 - 최근 몇 년 동안 유지되어온 저금리 기초,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급증 등 재정여건과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용보증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신용보증 관련기금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과 더불어 주요 선진 국가들의 신용보증제도의 운영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 관련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를 살펴 보면,

- 신용보증기금은 0.7% 감액된 3조 6,04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2.4% 증액된 1조 6,041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7.6% 증액된 1조 1,984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0.7% 감액된 8,285억원,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11.6% 감액된 1,075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005년도 계획 대비 6.1% 감액된 17조 9,839억원임.

□ 신용보증 관련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치이후 2005년 8월말까지 18조 9,411억원의 대위변제 발생 중에서 17조 6,333억원이 일반보증에서 발생하였음.
 - 동 기금의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한계기업에 대한 부분보증 비율의 인하, 장기·고액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증과 보증한도 피크제, 보증졸업제 등의 도입으로 재정건전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기금은 2000년 7월 P-CBO/CLO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5년 8월말까지 1조 3,078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으나, 신규보증 운용을 종료하고 차환발행만 지원함에 따라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이후 만기도래분부터는 전액상환을 유도하고, 보증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후순위+잉여현금)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8월말 현재 여유자금(유동성)이 1,450억원 불과하며 운용배수가 17.4배로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정상적인 보증 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동 기금은 경상경비의 절감이나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고, 정부출연금인 6,00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재정이 건전화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기금은 2001년에 2조 3,234억원 규모의 P-CBO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비현실적인 주가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보증공급과 부실보증심사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따라서 보상상시리뷰시스템의 정착과 피보증기업의 영업·자금 활용실태 등에 대한 사후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기관인 농협중앙회가 동 기금의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함에 따라 상호이해 상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인력운용의 독립성 확보와 위탁보증의 축소 및 신용평점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한 보증심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동 기금은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탁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위변제 발생비율이 자체보증보다 15.1%나 높아, 위탁보증 기준의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위탁보증 기준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부실감소 효과와 관리비용 증가를 비교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주택공사로 이관된 후 사고발생률은 개선(8.3%→7.1%)되는 추세이나, 정상화율은 저조(59.9%→25.6%)한 상태임.
 - 동 기금은 보증사고 잔액이 대위변제로 전환되는 평균비율(26.0%)보다 충당금 설정비율(30.8%)이 높아 2005년 6월말 현재 기금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1조 5,497억원의 보증사고 잔액에 대한 향후 사고정상화율 및 대위변제전환율의 추이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존함.
 - 따라서 효율적인 사후관리실 운영, 보증건전도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요율 차등폭 확대, 보증 최고한도제 도입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책을 강구 하는 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8월말 현재 전체 보증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업체 수에서 30.9%, 보증금액면에서 2.3%로 대기업에 편중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동 기금은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중소형 투자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와 달리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선진국의 사례로 본 시사점을 살펴보면,

- 미국의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청(SBA)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임.
 - 따라서 보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영역이 분명하고, 재정정책으로서 보증업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산의 집행도 전반적 경기변동 및 업종별 경기변동에 효율적이고 신속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여러 부처들이 신용보증제도에 관련되어 있음. 금융업무적 성격으로 인해 재정경제부가, 중앙예산당국으로서 기획예산처가 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에 계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보증제도의 개편이나 운영에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보증에서 신용보증 관련기금들은 중기업에 특화를 하고, 소기업의 보증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 지역의 지역보증에서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술보증의 업무는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 엔젤과 벤처자본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
그러나 제대로 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

- 각 지역의 소기업은 지역적 특성이 많아, 각 지역의 보증재단이 평가기능을 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음. 우리나라의 지역보증재단은 독일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역보증재단의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신용보증협회가 무담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액 중 80~90%를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이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금융공도가 보증액의 70~80%를 보험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무담보 신용대출액의 60% 정도만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보증조건과 보험조건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보증기관의 보증액은 전액 보험에서 인수해 주는 체제임.
 - 이러한 위험의 분담은 보증기관의 재정건실화로 이어져 높은 수준의 보증배수를 가능하게 해 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신용보완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OMB가 중앙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증프로그램에 대해 성과평가 방식인 PART를 시행하여 신용프로그램에 관한 존폐를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PART의 기준에 따라 폐지되게 됨.
 - 이처럼 미국에서는 융자보증 프로그램의 평가를 OMB의 PART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이와 유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체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정부출연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신용보증관련기금들의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IV. 복권기금 분석

- 복권기금의 2006년도 조달 및 운용계획은 2조 9,1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93억원(3.6%)이 감소한 가운데 61개 전체 기금운용계획액 358억 5,518억원의 0.8%를 차지함.
 - 조달측면에서 복권판매대금이 전년 대비 2,487억원(8.4%)이 감소한 반면,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가 1,403억원이 순증(100%)한 것을 위시하여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3,281억원(164.7%) 증가했음.
 - 운용측면에서는 ‘주거안정’이 전년도 예산액 39억원이 전액 감소한 것을 위시하여 재해재난긴급구호사업이 100억원(50.0%)이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복지사업 등 복지사업지출과 여유자금운용이 각각 전년대비 470억원(43.8%)과 375억원(52.4%) 증가했음.

- 복권기금의 복권수익금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 첫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8개의 신규사업이 새로이 포함된 결과 4개 분야의 21개 사업부문(9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으로써 외국의 3~7개 사업부문과 비교할 때 영역이 지나치게 넓음.
 - 둘째, 법령체계의 모순임. 이는 모법(「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배분이 시행령 제17조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동법 제3항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지출을 제외한 복권수익금에 대해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 규정이라는 데 기인함.
 - 셋째, 보건복지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복권수익금사업은 해당 부·청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내 구분계리의 불가(不可)함으로 인해 동 사업이 복권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성과평가의 주관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넷째,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간의 포괄 범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의 통상적 회계 및 기금 사업과의 일부 중복 및 유사성 등임. 구체적으로 두 법정배분사업 간의 노인교통수당을 위시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립 등’을 통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부사업과 일반회계·기금사업의 중복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합리성 여부임. 이는 65세 이상 신청자 모두가 지급대상자로서 사망 시까지 계속 대상자로 남는다는 점과 동 제도는 개인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임.

□ 복권수익금사업의 상기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사회적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현실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실현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함.
- 둘째, 「복권및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법령체계상 모순을 시정하고, 복권수익금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내 구분계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즉 예산회계법상의 예외 조항의 신설 및 회계방식의 강구 등이 필요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제주도개발사업은 그 목적이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통합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복지사업 간 또는 제주도개발사업과 통상적인 회계·기금의 일부 유사사업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노인교통수당의 문제는 실제로 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소득과약 수단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 3 부

부문별분석

재정·금융

I.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평형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5년도 계획 대비 2.8% 증액된 38조 7,040억원임.

- 동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동 제도 하에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방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먼저 경제적 기초여건에 맞는 적정 환율범위를 정하고, 이를 벗어나 단기적으로 급등 또는 급락할 때에 한하여 개입을 해야 함.
 -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환율유지는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 규모는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속적인 환율 안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등 동 기금의 역할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시장개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이차손이 발생함.
 - 미국의 경우, 재무부의 월별 수입지출표를 통해 외화안정기금의 거래손익, 순이자수입, 평가손익 등을 공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실시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누

적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동 기금은 발행잔액이 50억 달러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기준금리 체시를 통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2005년 10월~11월 및 2006년 6월 중 추가로 각각 10억 달러의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예정임.
 - 그러나 외화 외평채 발행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인 A등급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들여와 대부분 AAA등급인 미국채 등에 투자를 하면 그 차이인 외평채 가산금리 만큼 손실이 발생함.
 - 동 기금에서 외평채의 발행이 민간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오히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입지를 줄여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II.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006년도 조달·운용이 103조 5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518억원(21.1%) 증가했음.
- 2006년도 예산안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발행은 외국환평형기금 20조 2,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66조 4,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140억원(11.8%)이 증가했음.
 - 국채발행의 증가로 인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달금액 중 국채발행 비중은 2002년도의 경우 40% 대에 머물렀지만 2003년도 이후에는, 비록 2006년도는 기금운용계획상 그 비율이 다소 하락하지만, 50%대에서

60% 대로 급격히 상승했음.

- 국채발행의 경감은 재정지출을 경감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업무)’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작업을 위시하여 예산편성 시 대형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작은 사업 및 기관운영에서의 예산낭비사례 근절이 중요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인수 중 지방채 인수의 상대 비중은 특수채의 비중 증가와는 달리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연기금 등 여유자금’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 인수계획은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동 기금의 다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 또는 국채발행에 의존함을 의미함으로써 결국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 공공여유자금을 활용을 통해 국공채를 인수’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동 계획 대비 실적 부진은 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함. 이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여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위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틀이 중복 설치된 상황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이들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바람직함.

통일·외교

I. 남북협력기금

- 향후 기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증액과 부채성 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증가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경제 및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남북협력사업을 전적으로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새로운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정부는 2005년 7월 ‘경추위’에서 남북농업, 경공업, 수산, 광공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대북 직접 송전계획을 발표하였음.
 -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남북간 실무회담과정에서 가급적 용자사업(또는 차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대북 송전지원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평화비용’ 또는 ‘통일비용’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북 송전지원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북측에 시장경제를 습득시킨다는 측면에서 무상지원을 지양하고 가급적 용자 또는 차관사업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있어 기금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특히 용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집행부진에 따라 대부분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경제협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력·통신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 및 종합기술교육센터의 건립지원이 필요함.

II. 국제교류기금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05~2009 중기사업계획에 따르면, 해외한국학진흥은 위축되는 반면, 재외동포재단지원은 점차 늘어나 동 재단의 당초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한국학진흥사업 비중이 2005년도의 36.9%에서 2009년도까지 31.6%로 축소되고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이 2005년도의 33.6%에서 2009년도에는 37.1%로 증가되어 동 기금의 주 사업이 역전됨.
 -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을 동급의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주요 사업목표로 밝힌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교수직 및 강좌 운영지원사업 총 기금운용계획안 43억원 중 협약

사업이 약 13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중 미국 사업 비중은 약 7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성이 보장되는 협약사업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외 지역의 경우 단년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협약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이를 점차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의 업무 자체가 국제교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동 기금의 신설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III. 대외경제협력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5년도 계획 대비 4.6% 증액된 6,455억원임.
- 동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2005년말 여유자금의 규모는 약 4,200억원 수준으로 2006년에 2,600억원, 2007년에 3,000억원 등 기 승인된 차관자금 집행으로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8년부터는 연초보유자금(3,020억원)이 당해연도 차관집행 규모(3,500억원)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1,500억원의 재정출연 규모는 동 기금으로서는 대개도국 지원약속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인 것으로 보임.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동 기금은 매년 21.8%씩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009년에는 연간 집행규모를 4,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06년 이후 매년 2,000~3,000억원 규모의 재정출연이 필요할 것을 보임.

- 그러므로 출연소요액을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원조달 및 원조규모 확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ODA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처럼 이원화된 원조제도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원조조정기구를 통한 조정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원조정책을 집행하는 부처간·집행기관간의 정책입안 및 집행조정을 위해 2005년 1월「ODA 정책실무협의회」란 협의체를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임. 또한 정부간 지원절차 단축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특정 수원국에서는 유·무상원조가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원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정기적인 「ODA 정책실무협의회」 개최와 지원절차 단축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하여 원조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와 다자간 원조전략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
- 동 기금은 1987년 유상원조를 시작한 이래 2005년 8월말 현재 38개국 128개 사업에 2조 1,787억원을 승인하여, 1조 4,204억원을 집행하였음.
 - 각 사업은 아시아지역 65.1%, 유럽지역 13.0%, 중남미지역 7.2%, 아프리카지역 9.9%, 중동지역 4.0% 등으로 지역의 편중이 심한 편임.
 - 그러나 최근 개방화·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역내국가간 블록화 추세가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음. 따라서 아시아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국내기업의 시장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조의 편중은 이라크, 중국, 인도네시아 등 특정국가에 대해

서도 심한 상태임. 이러한 편중현상은 대외원조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향후 원조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 방

I. 군인복지기금

- 군 체력단련장 입장료 수입감소의 문제
 - 2004년 8월 1일부터 정회원 배우자가 종래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6년도 군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서 군 체력단련장 입장료 수입이 2005년도 대비 5.7% 감소된 751억 4,300만원으로 하향 편성되었음. 군 체력단련장이 복지시설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기금의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한 만큼 군인 배우자의 정회원 자격부여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일반인의 입장료 인상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임.

-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통합운영 필요
 - 현행 군인복지기금의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사업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사업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위탁 사업과도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소관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대상 전국 순회상담 및 지방관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보훈기금을 통해 각종 제대군인 대부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군인연금특별회계)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
 -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각종 복지사업을 연금기금의 틀 속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인복지사업만이 연금이 아닌 군인복지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 군인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막대한 일반회계의 재원이 연금지급 부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복지시설로부터의 수입금을 전액 연금이외의 군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연금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출연금 등의 규모 결정이 군인연금과 군인복지기금을 포함한 군인복지의 큰 틀 속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II. 보훈기금

- 일반회계와 기금의 유사사업 통합 필요
 -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사업인 국가유공자 단체운영보조 사업, 학자금 지급 사업 및 보훈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사업 등은 기금의 국가유공자 단체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및 보훈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사업 등과 유사·중복사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위 사업들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의 부적정성
 - 현재의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은 재향군인회 자회사의 우회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로 동일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

하고, 과도한 보훈성금의 기부로 인한 자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각 자금간 구분 운영의 재검토

- 보훈기금법 제6조(기금의 구분)는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금별 조성재원 및 규모, 주요사업 등이 상이하고 각 자금간 전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기금의 자금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자원배분의 경직성이 초래되고 통합운영의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금의 자금별 칸막이식 운영을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통합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주택대부사업의 개선

- 보훈기금의 주택대부사업은 대출한도액(3천만원)의 부족으로 그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인 바 향후 대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엄격한 대출 우선순위 적용을 통해 수혜자의 수를 줄이더라도 대출한도액을 과감히 늘리거나, 사업방식을 이차보전 또는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III. 군인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의 2006년도 조달 및 운용규모는 897억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400억원이 순증하였으며, 전액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도록 계획하였음.

- 연금운용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금재정의 안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군인연금재정운용의 일원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기금으로의 일원화를 통해 연금정책과 연금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와 미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짐.

-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군 제도의 특수성과 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재정 위기의 심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짐.
 - 17%에 불과한 연금재정의 자립도와 국방개혁안으로 인해 연금소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책임준비금 적립과 같은 군인연금 재정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효율적인 연금제도 운용을 위한 조직의 정비가 요구됨.
 - 연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해서 군인연금관리 인력에 대한 보강이 요구됨.
 - 향후 기금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작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교 육

I. 사학진흥기금

- 2004년 말 현재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실적은 총 7,260억원이며,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06년 말에는 7,4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5년간 사학의 융자신청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비 배정 비율은 40% 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복권기금을 통한 복권수익금 지원 사업 분야에 사학의 특수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사학진흥재단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학 교육시설의 조기공급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수익률을 보장받는다면 사학진흥기금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정적 기금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장래의 사학지원 사업은 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사학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사학경영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등으로 다각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의 다각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혁신하여 역량을 축적해야 함.
 - 사학진흥재단이 그 동안 수행해 온 사학에 대한 재정평가, 융자지원 등

의 노하우(know-how)를 사학재정의 투명성 확보, 사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재단의 사업을 전문화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사학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학진흥재단의 교육인적자원부 위탁업무를 예·결산 검토와 회계검토로 확대하는 등 사학진흥재단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II.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2006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운용 규모는 2005년도보다 13.2% 증가한 6조 1,83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금급여 대상자의 증가와 생활안정자금 대여 증가로 사업비가 3,290억원 증가하고 여유자금운용에서 5,068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관리공단은 재정재계산을 통해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그것을 기금운용 계획안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복수의 기관에 의하여 재정재계산 연구가 수행되게 하고, 그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가장 타당성 있는 재정재계산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임.
- 특정 시점에서의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수지균형보험요율 등에 관한 정보는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어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주체에 적용을 의무화하여 매년 책임준비금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며, 사학연금기금 결산서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매년 236억 3,000만원의 퇴직수당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퇴직수당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공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공단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현재 기금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는 책임준비금 적립과 급여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재정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채권과 주식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수익률이 계속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운용자산 중 직접투자 비중과 간접투자 비중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실물자산에 대한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 헤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부동산 간접상품 등에 투자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다각화는 필요하나 투자사업의 안정성 확보란 측면에서 리츠와 PF사업에의 투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문화·관광

I.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총 5,198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58억원 감소한 1,112억원을 계획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사업 개편이 필요함.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가 반영된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자체 기획이나 재교부, 지정 등의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최근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기금 사업비의 확대에 의해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 자금화에 따른 공공재원의 확보와 재정 통제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자원에 의한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II.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총 5,487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13.1% 감소한 2,558억원을 계획하였음.
- 체육 단체에 대한 관례적인 운영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과 지원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국민 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성과가 있으나, 기금의 주요 사업으로서 재정 운용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업 추진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 연차별 추진실적에 따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III.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06년도에 총 4,66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4,183억원을 계획하였음.
- 기금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관광분야 재정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포함한 관광분야 재정 규모는 총 6,482억원이며, 이 중 기금의 비중이 64.5%,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가 35%이며 일반회계는 0.5%에 불과함.

-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기금의 지원이 관례적인 운영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지원은 2001년부터 면세점에 대한 독점권을 잃게 되면서 국고와 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588억원이 계획되었음.
 - 2000년 이후 공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고 및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IV. 방송발전기금

- 방송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총 2,20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24.2% 증가한 1,713억원을 계획하였음.
- 2006년도에 처음으로 계획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60억원, 방송위원회 일반회계에서 91억원, 총 15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한국방송공사의 재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위원회는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중앙관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등에 대한 지원은 2006년도 단년도 지원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외 공공방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방송발전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개편 노력이 필요함.

- 방송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예술단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비 지원은 전년대비 26.7% 증가하였음.
- 공익방송지원에 있어서, 국회방송에 대한 지원은 프로그램제작비 31억원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나 채널운영관리와 시설 및 자산 구입 예산 33억원은 국회의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각 사업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각 센터를 네트워크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I.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7,189억원을 조달 및 운용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51.1%가 증가한 규모임.
 - 조달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R&D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하여 2,7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며, 동 재원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출연,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및 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임.
 - 운용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원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460억원 규모)가 기금으로 이관되었음.

-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 지원 사업은 국채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입되는 연구개발 자금 중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기금의 출자를 통해 과학기술 모태펀드를 설립하고, 이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성된 자펀드를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과학기술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TF 구성을 추진중이며,

2006년 상반기까지 펀드 운용방안 수립, 관계법령 개정 및 전문 관리기관 설립 등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 기본환경 정비와 계획 수립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까지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미래형해양운송체계구축 사업은 국채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입되는 연구개발 자금 중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대형 위그선의 상용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재정에서 850억원을 부담하고, 민간에서 850억원을 부담할 계획임.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그선의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대형 위그선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20인승급 소형위그선 개발 사업이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추진중임.
- 따라서, 대형 위그선 개발 사업을 소형 위그선 개발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소형 위그선 개발 사업 종료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II.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이 2005년부터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06년도에 1조 3,590억원을 조달 및 운용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3.4%가 감소한 규모임.

- 조달과 관련한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민간출연금의 경우, 2005년도에는 WiBro 사업권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납부가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

- 동 기금은 2002년부터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2004년말의 누계 순조성액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던 2001년말에 비해서 23.7%가 감소하였음.
 - 동 기금은 통신사업자의 부담금으로 70%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신규사업권 부여에 따른 출연금 납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신규 재원의 발굴 등 동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 기금은 2004년말에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처음 작성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안은 중장기 운용계획을 처음 반영한 계획임.
 - 중장기 운용계획에서 축소하기로 계획한 정보통신인력양성 사업이 2006년도 계획안에서는 증가하는 등 중장기 운용계획에서 밝힌 중기 재원배분 계획이 2006년도 계획안 작성시 반영되지 않음.

- ICU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은 2006년도에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음.
 -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ICU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정보화촉진기금의 투입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부는 향후 최소 운영비만 지원하고, ICU가 자구 노력에 의하여 자체 수익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동 사업은 ICU의 재정상황 및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농어촌

I. 축산발전기금

- 신규재원 개발 필요
 -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용자원리금 회수와 여유자금 회수가 전체의 84.1%를 차지함. 한편 마사회납입금은 12.1%를 차지함.
 - 자체 세입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재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예산사업과의 통합 필요성과 기금사업 특화 필요
 - 학교우유급식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질병근절대책, 가축공제, 축산자조사업, 축산종합컨설팅,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품질고급화 장려금, 친환경축사시범사업 등의 경상사업은 예산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위생·안전성 제고, 축산물 브랜드화사업 등에 특화할 필요가 있음.

- 여유자금운용계획 축소 필요
 - 축산발전기금은 운용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중이 23.4%로, 운용 비중이 축산발전기금보다 큰 기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농작물재해

보험기금뿐임. 사업을 연중실시하면서 여유자금운용규모가 큰 것은 문제임.

- 여유자금을 적정규모로 운용하기 위해서 융자사업 중 집행률이 양호하나 예산액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II. 농지관리기금

□ 농지조성사업 재검토 필요

- 쌀의 과잉재고와 휴경 농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6년 약 3,45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 1조 3,431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농지조성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쌀재고량은 2005년 967,000톤(재고율 1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쌀 재고량은 2014년 276만톤~315만톤(재고율58.3%~6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휴경되는 논 면적이 쌀생산조정제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휴경농지는 47,800ha였음(휴경률 2.6%).
- 신규로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쌀소비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량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의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관리·유지하는 사업이 필요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충 필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농지담보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목적으로 신규로 도입된 사업임.

- 농지담보 연체채권 물량이 4,140ha인 것과 비교하여 사업물량은 66ha로 4,140ha의 약 1.6%에 지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젊은 농업인의 탈농을 촉진하여 농업구조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침.
- 농지가격의 안정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확충이 필요함.

III.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쌀소득보전 예산확보 필요

- 2005년 10월 14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04년 산지 쌀값 대비 12.4% 하락하였음.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하에서 쌀값하락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계한 후 중기재정계획의 재원조달과의 차액을 계산해 보았음.
- 2005년산의 산지 평균 쌀값이 2004년 산지가격 대비 10% 하락한 후, 2006년산 이후 매년 2% 하락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3,069억원에서 3,906억원이 부족함. 그리고 2005년산 산지 평균 쌀값이 2004년 산지가격 대비 10% 하락한 후, 2006년산 이후 매년 5% 하락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약 3,069억원에서 8,264억원이 부족함.
- 2005년산의 산지 평균 쌀값이 2004년 산지가격 대비 15% 하락한 후, 2006년산 이후 매년 2% 하락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약 7,251억원에서 7,922억원이 부족함. 그리고 2005년산 산지 평균 쌀값이 2004년 산지가격 대비 15% 하락한 후, 2006년

산 이후 매년 5% 하락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약 7,251억원에서 1조 2,038억원이 부족함.

□ 재원조달 방법 강구 필요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사업목적이 상충되는 사업, 예를 들면 경영이양 직불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의 재원을 삭감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산업·중소기업

I. 전력산업기반기금

- 무연탄 발전지원사업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내 무연탄을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무연탄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고가의 국내 무연탄을 발전연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효율성 증진이라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내무연탄 발전소에 대한 비용이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가동되는 발전사업자의 발전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지역난방 열공급을 원활히 하여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생산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전 받지 못한 변동비 손실을 지원함.
 - 그러나 일부 지역의 열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수용자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의 사업수행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향후 수혜자(열수용가)의 부담원칙에 따라 열 요금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비용이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II.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마케팅 수행능력을 배양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 신규 설치 지역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및 노보시비르스크,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들 국가가 BRICs 국가로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이 선정이유이나, 중진공이 업계의 설치 희망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상하이, 미국 뉴욕, 그리고 일본 오사카 순으로 조사되었음.
 - 신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을 단지 성장성만을 감안하여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인바, 우선 신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설치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및 노보시비르스크,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은 향후 수요를 봐가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사업은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R&D지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들이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추진지침」제 11조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45일로 장기 소요되고 있어 자금지원의 신속성 및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편 중진공의 타 자금인 구조개선자금 및 수출금융지원자금은 처리기한이 각각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금선정위원회가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최되고 있으며, 수출금융지원자금은 자금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자금지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자금선정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부의기준을 현행 전체에서 지원금액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I. 국민연금기금

-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70조 9,083억원으로 2005년의 61조 766억원에 비해 16.1%가 증가하였음. 2006년도 보험료 수입은 21조 3,163억원으로 2005년도 20조 6,904억원에 비해 3.0%가 증가한 규모이며, 2006년도 급여비 지출은 4조 2,835억원으로 2005년도 3조 8,256억원에 비해 12.0%가 증가한 규모임.

-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총가입자 수 대비 납부자 수는 78.7%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추정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각지대에 속하는 가입자의 비중은 21.3%로 예상되므로 사각지대에 속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2006년도 보험료 수입추계에서는 적용된 변수의 변경으로 인해 2006년도 보험료 수입의 과소 추정문제가 제기됨.

- 영세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확대를 위한 3단계 사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영세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확대 사업은 보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므로 2003년 1단계, 2004년에 2단계를 실시하여 근로자 수 기준으로 각각 20%와 40%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음.
 - 2006년도에 시작되는 3단계 사업의 대상기업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영세한 사업장으로서 종사자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동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 및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나친 의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업주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규모 66조 1,725억원의 투자전략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지 못하였음.
 -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06년도 투자규모는 2005년 5,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이 증가한 8,000억원임. 그 결과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0.7%포인트 감소하고 해외주식 투자비중은 0.7%포인트 증가하였음.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 여유재원의 중·장기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어떤 투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투자규모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1,331억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총 관리운영비 4,277억원의 31.1%에 해당하는 금액임. 사회보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국회 국민연금개선특별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연금재정 안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계산제도에 따라 급여와 보험료 수준 간의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2005년 말부터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다층구조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II. 국민건강증진기금

-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2조 326억원으로 2005년의 1조 4,235억원에 비해 42.8%가 증가하였음. 기금의 조달규모가 2005년도에 비해 42.8%가 증가한 것은 담배가격의 추가인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배부담금 수입이 2005년도에 비해 4,411억원 증가한 1조 7,678억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었음.
 - 정부는 2004년 12월에 담배가격을 인상한 후 1년 만에 담배가격 500원의 추가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담배가격 추가인상은 1년 전에 시행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금연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정부는 담배가격 추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지원을 위해 2005년 3월 이후 3개월 간격으로 3차례 흡연율 감소성과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금연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성공적인 금연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간격으로 조급하게 금연효과를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를 설명하는 논리가 부족할 경우, 담배가격의 추가인상은 정부가 금연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히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된 주요사업들이 기금조성财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인 1차 예방사업과 연계성이 매우 약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2006년도에 기금 총사업비의 64.9%인 1조

1,491억이 지출될 예정임.

- 건강증진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보건산업진흥 연구 개발(R&D) 사업’에 1,843억원 지출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해 온 ‘보건산업진흥 R&D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한 데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함.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함.
 - 2005년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대폭 이관된 일반회계 사업들이 2006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인개안수술, 에이즈 감시정보시스템 운영 및 생물테러관리 등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예산 64억원이 기금으로 이관되는 것은 문제임.
-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지출의 약 5%에 해당하는 엄밀한 의미의 ‘건강증진관련 사업비’조차도 주로 보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별로 접근해야 하는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보건소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등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학교와 직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수행이 필요함.

III.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의 2006년도 조달 및 운용 규모는 9조 6,089억원으로, 연금 기여금과 부담금 등으로 조달되며, 연금급여로 6조 3,142억원이 계상됨.
- 국가보전금 계상에 있어 법 규정에 따른 정확한 산정이 요구됨.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보전금 산정방식은 당해연도 수지 적자분에서 전전년도 연금수지 잉여액을 가감하도록 함.
 -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시되는 국가보전금 규모는 당해연도 연금수지적자분만 계상하고 있어 규정에 따른 정확한 보전금 규모의 제시가 요구됨.
 - 당해연도 수지적자분에 대한 산출내역 추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보전금이 실수요액과 상관없이 과다하게 징수되어오고 있음.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연금부채의 성격을 갖는 책임준비금은 현행 「저부담·고급여」 제도의 유지시 그 규모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래세대 재정구조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이 필요함.
 - 정확한 책임준비금 규모 추계를 위해 재정재계산과 같은 장치가 적시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함.
- 기금사업에 있어 안정성 바탕위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산 만덕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률 14%로 사업지 선정과 수요예측조사 등에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운용수익에 앞서 해당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환 경

I. 한강수계관리기금

-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액은 2000년 이후 매년 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735억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음.
 - 주민 만족도, 비용 대비 편익에 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예산규모에 반영하는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의 977억원 대비 26.8% 감액된 715억원이 계상되었음.
 - 그 동안의 투자의 결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임.
 - 향후에는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예산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토지매수사업은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71.0% 증액된 1,031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수계관리위원회는 수변거리별·오염원 입지별 우선매수 토지지역을 선정 한 후 이를 집중매수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환경청정산업지원은 2006년도에 2005년도의 120억원 대비 18.3% 증액된 14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소규모·단년도 위주의 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문제점이 제기됨.

노동

I. 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006년도에는 2005년도의 9조 1,113억원 대비 1,925억원 증가한 9조 3,038억원이 적립될 전망이다.
 - 노동부는 정확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를 통하여 적정 적립금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정 수입과 지출을 산출한 후 기금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영세사업장 등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2004년의 경우 영세사업장인 5~9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사업의 활용도가 각각 11.6%와 3.0%로 매우 저조함. 고용안정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임.

- 2006년도 고용안정사업은 전체 36개의 세부사업 중 14개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신규사업은 주로 고용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차원에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기금사업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야 중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는 2006년도의 예산액은 2005년도의 2,219억원 대비 48.6% 증가한 3,298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제조업 기능사 양성훈련은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훈련수료 후 취업률 또한 저조하므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II.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산재보험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2002년도의 1,429억원에서 2003년도의 7,435억원, 2004년도의 1조 5,501억원, 2005년도의 1조 8,852억원, 2006년도의 2조 1,374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는 정확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적립금 부족액을 단계적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2006년도 산재보험기금의 보험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은 60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 이는 관리운영비인 1,252억원의 4.8%에 그치는 규모이므로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임.

- 2006년도 산재예방사업은 2005년도의 2,369억 6,100만원 대비 5.8% 증가한 2,506억 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 영세 취약사업장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정책수립,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산재예방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은 87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2006년도 산재보험기금 지출계획액 4조 903억원의 1,000분의 2에 불과한 금액이며 법 규정에 의한 기금지출총액의 3%인 1,227억원의 7.1%에 그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소 계상되었다고 보임.

사회간접자본

I. 국민주택기금

-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의 총 규모는 20조 2,273 억원으로 2005년의 20조 5,203억원에 비해 2,930억원(약 1.4%) 감액되었음.
 - 조달은 이자수입 등의 2,296억원, 전년도 이월금의 909억원 감액되고, 운용은 수요자용자지원의 4,600억원, 여유자금 운용의 2조 3,110억원 감액됨.

-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의견은 ①장기임대주택공급 계획 수립의 법제화 필요성, ②중장기자금운용계획 수립의 법제화 필요성, ③기본계획에 성과평가 계획의 포함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장기임대주택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포함하여 법제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총 주택재고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이므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함(주요 선진국의 경우 7~36%).

- 둘째, 거시경제 전망, 임대주택의 수요 추정, 자금조달 계획의 수립, 대출 이자율의 설정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자금운용계획 수립의 법제화가 필요함.

- 국민주택기금의 사업비는 7조 2,995억원에서 임대주택 건설 자금은 2조 9,275억원(40%), 분양주택 건설 자금은 1조 4,480억원(20%), 수요자용자 지원은 2조 6,839억원(37%)으로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 셋째, 장기임대주택공급계획과 국민임대주택의 중장기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사업성과 사례와 같이 주거수준, 주거비, 만족도, 부동산가격 안정 등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006년도 예산안 분석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요약 —

발 간 일 2005년 10월 25일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발 행 인 배철호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TEL 02·788·376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89-91444-55-5 93320

© 국회예산정책처, 2005



발간등록번호
31-9700211-000261-14